#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입주자모집공고(정정)

\*성약 Home



구글플레이스투어



애플앤스투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내 대표번호(☎032-568-1999)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정정안내 (2024.02.22.(목) 공고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입주자모집공고 57페이지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변경 전]

#### 5. 빌트인 가전제품

		ALT-1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 가구패널 마감	1,070,000		
냉장고장/ 빌트인 냉장고	99A	삼성전자 (비스포크)	ALT-2	냉장고장 +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C7(9/8)95AP)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0AP) + 1도어 키친핏 김치 (RQ34C7(9/8)45AP) + 키큰서랍장(W=300) + 가구패널 마감	7,1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택1
		LG전자 (오브제)	ALT-3	냉장고장 +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키큰서랍장(W=300) + 가구패널 마감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 [변경 후]

## 5. 빌트인 가전제품

		ALT-1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 가구패널 마감	1,070,000		
냉장고장/ 빌트인 냉장고	99A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장 +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C7(9/8)95AP) ALT-2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0AP) + 1도어 키친핏 김치 (RQ34C7(9/8)45AP) + 키큰서랍장(W=300) + 가구패널 마감	7,1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택1
		LG전자 (오브제)	생장고장 +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키큰서랍장(W=300) + 가구패널 마감	8,1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2. 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구)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 (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10년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 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청약 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기준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23.11.1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2044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 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필요					
소득 또는 자산기준			적용		적용				

- ※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③토스인증서를 ⑥ 신한인증서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0	0	0	0	0	0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화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일반공급 세대 중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 주택형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 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 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청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 제한 기간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	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 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 을 참고하시어 계약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공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 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등은 동법 제8조 및 제반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및 법인)는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상기 법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 및 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며「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주택법」제101조에 의거 처벌(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됩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전매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공급, 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향후「주택법」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4.03.04.(월)	2024.03.05.(화)	2024.03.06.(수)	2024.03.12.(화)	2024.03.15.(금) ~ 03.22.(금)	2024.03.26.(화) ~ 03.29.(금)
방 법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 (10:00~16:00)
장 소	<ul>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 앱(청약 Home)</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li>■ 견본주택(10:00~14:00)</li> </ul>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 Home)		(인천광역시 서구 ※ 자격확인서류제출일 및 계약을	코비스타 견본주택 원창동 381-12번지) 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시 추후 통보 예정임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 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제65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2747호 (2024.02.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9BL(마전동)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20층, 11개동, 부대복리시설, 총 732세대

[특별공급 324세대(일반[기관추천] 50세대, 다자녀가구 70세대, 신혼부부 91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9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2026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b>T</b> E !!	주택 로메기비송			주택형	OFAL		공급면적		기타			+			특별공급	급 세대수			011133	최하층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수택영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하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84.9996A	84A	84.9996	25.0428	110.0424	49.7375	159.7799	56.2033	296	29	29	52	8	56	174	122	16	
		02	084.9654B	84B	84.9654	26.2965	111.2619	49.7175	160.9794	56.1807	114	11	11	20	3	21	66	48	6	
		03	084.9392C	84C	84.9392	25.0771	110.0163	49.7022	159.7185	56.1633	74	7	7	13	2	14	43	31	4	
		04	084.9746D	84D	84.9746	26.8282	111.8028	49.7229	161.5257	56.1867	36	3	3	6	1	6	19	17	2	
민영	202422224	05	099.8313A	99A	99.8313	28.9732	128.8045	58.4164	187.2209	66.0103	55	0	5	0	1	0	6	49	3	
주택	2024000004	06	099.9812B	99B	99.9812	29.2734	129.2546	58.5040	187.7586	66.1094	37	0	3	0	1	0	4	33	2	
		07	119.9625A	119A	119.9625	33.4889	153.4514	70.1962	223.6476	79.3214	30	0	3	0	0	0	3	27	0	
		08	119.9625B	119B	119.9625	33.4889	153.4514	70.1962	223.6476	79.3214	30	0	3	0	0	0	3	27	3	

225.0821

225.0821

79.3426

79.3426

30

30

732

0

50

3

70

0

91

0

0

16

97

3

3

324

27

408

(단위: m², 세대)

0

3

39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119.9946C

119.9946D

09

10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각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나 계약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0.2150

70.2150

154.8671

154.8671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4.8725

34.8725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 대지면적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9.9946

119.9946

합계

119C

119D

####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996A	084.9654B	084.9392C	084.9746D	099.8313A	099.9812B	119.9625A	119.9625B	119.9946C	119.9946D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99A	99B	119A	119B	119C	119D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 119A/B, 119C/D 타입은 해당세대 전면에 오픈 발코니가 설치됩니다. 119A 및 119C 타입은 거실 전면에 119B 및 119D 타입은 침실2 전면에 설치되며, 해당타입 동 층별로 교차되어 오픈 발코니가 설치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공급		해당			공급	금액		계약금(10%)			중	도금(60%)			잔금(30%)
약식 표기	세대	동호	층구분	세대	대지비			합계	AIOFTI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五八	수			수	내시미	건축비	부가가치세	압계	계약시	2024.06.26	2024.10.29	2025.02.28	2025.09.30	2025.12.24	2026.03.30	입주지정일
		7101동(1,2호)	1층	8	197,927,900	290,072,100	-	488,0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46,400,000
		7102동(1,2,4호)	2층	16	197,927,900	297,072,100	-	495,0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48,500,000
		7103동(1,3,4호)	3층	16	197,927,900	302,072,100	-	50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50,000,000
84A	296	7107동(1,3,4호) 7108동(2,4호)	4층	16	197,927,900	307,072,100	-	505,0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51,500,000
		71008(2,4포) 7109동(2호)	5~9층	80	197,927,900	317,072,100	-	515,0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7110동(1호)	10~15층	96	197,927,900	322,072,100	-	520,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56,000,000
		7111동(1호)	16~20층	64	197,927,900	327,072,100	-	525,0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57,500,000
			1층	3	197,848,300	288,151,700	-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7101동(3호)	2층	6	197,848,300	294,151,700	-	492,0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7102동(3호)	3층	6	197,848,300	299,151,700	-	497,0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84B	114	7108동(3호)	4층	6	197,848,300	304,151,700	-	502,0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7109동(3호) 7110동(2호)	5~9층	30	197,848,300	314,151,700	-	512,0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53,600,000
		71108(2호)	10~15층	36	197,848,300	319,151,700	-	517,0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 , ,	16~20층	27	197,848,300	324,151,700	-	522,0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56,600,000
			1층	2	197,787,000	276,213,000	-	474,0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42,200,000
			2층	4	197,787,000	282,213,000	-	480,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44,000,000
		7108동(1호) 7109동(1호) 7110동(3호)	3층	4	197,787,000	287,213,000	-	485,0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84C	74		4층	4	197,787,000	292,213,000	-	490,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47,000,000
		7110동(3호) 7111동(3호)	5~9층	20	197,787,000	302,213,000	-	50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50,000,000
		71118(J <del>X</del> )	10~15층	24	197,787,000	307,213,000	-	505,0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51,500,000
			16~20층	16	197,787,000	312,213,000	-	510,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53,000,000
			1층	2	197,869,400	288,130,600	-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2층	2	197,869,400	294,130,600	-	492,0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3층	2	197,869,400	299,130,600	-	497,0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84D	36	7103동(2호)	4층	2	197,869,400	304,130,600	-	502,0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50,600,000
		7107동(2호)	5~9층	10	197,869,400	314,130,600	-	512,0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53,600,000
			10~15층	12	197,869,400	319,130,600	-	517,0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16~20층	6	197,869,400	324,130,600	-	522,0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56,600,000
			2층	3	232,464,600	288,668,545	28,866,855	55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65,000,000
			3층	3	232,464,600	294,123,091	29,412,309	556,0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66,800,000
		7104동(3호)	4층	3	232,464,600	299,577,636	29,957,764	562,0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168,600,000
99A	55	7105동(3호) 7106동(3호)	5~9층	15	232,464,600	310,486,727	31,048,673	574,0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172,200,000
		/ 100중(3오)	10~15층	18	232,464,600	315,941,273	31,594,127	580,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74,000,000
			16~20층	13	232,464,600	321,395,818	32,139,582	586,0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175,800,000
		7101동(4호)	1층	2	232,813,600	267,442,182	26,744,218	527,0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58,100,000
99B	37	7101동(4호) 7109동(4호)	2층	2	232,813,600	273,805,818	27,380,582	534,0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 , ,			3=,0:0,000		1,555,552			,, - 30		,,	,,	,,	3-7:7:0	

			3층	2	232,813,600	279,260,364	27,926,036	540,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62,000,000
			4층	2	232,813,600	284,714,909	28,471,491	546,0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5~9층	10	232,813,600	295,624,000	29,562,400	558,0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10~15층	12	232,813,600	301,078,545	30,107,855	564,0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169,200,000
			16~20층	7	232,813,600	306,533,091	30,653,309	570,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2층	3	279,341,500	378,780,455	37,878,045	696,0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08,800,000
		7104동(1호)	4층	3	279,341,500	391,507,727	39,150,773	710,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13,000,000
119A	30	7105동(1호)	6,8층	6	279,341,500	404,235,000	40,423,500	724,0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217,200,000
		7106동(1호)	10,12,14층	9	279,341,500	410,598,636	41,059,864	731,0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16,18,20층	9	279,341,500	416,962,273	41,696,227	738,0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21,400,000
			1층	3	279,341,500	370,598,636	37,059,864	687,0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206,100,000
		7104동(1호)	3층	3	279,341,500	385,144,091	38,514,409	703,0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210,900,000
119B	30	7105동(1호)	5,7,9층	9	279,341,500	404,235,000	40,423,500	724,0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217,200,000
		7106동(1호)	11,13,15층	9	279,341,500	410,598,636	41,059,864	731,0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17,19층	6	279,341,500	416,962,273	41,696,227	738,0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21,400,000
			2층	3	279,416,200	378,712,545	37,871,255	696,0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08,800,000
		7104동(2호)	4층	3	279,416,200	391,439,818	39,143,982	710,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13,000,000
119C	30	7105동(2호)	6,8층	6	279,416,200	404,167,091	40,416,709	724,0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217,200,000
		7106동(2호)	10,12,14층	9	279,416,200	410,530,727	41,053,073	731,0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16,18,20층	9	279,416,200	416,894,364	41,689,436	738,0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21,400,000
			1층	3	279,416,200	370,530,727	37,053,073	687,0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206,100,000
		7104동(2호)	3층	3	279,416,200	385,076,182	38,507,618	703,0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210,900,000
119D	30	7105동(2호)	5,7,9층	9	279,416,200	404,167,091	40,416,709	724,0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217,200,000
		7106동(2호)	11,13,15층	9	279,416,200	410,530,727	41,053,073	731,0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17,19층	6	279,416,200	416,894,364	41,689,436	738,0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21,400,000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분양가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충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충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분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자격 검증 등에 대한 판단 업무는 사업주체에서 실시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실외기실)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유상옵션 및 발코니 확장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유상옵션 및 발코니 확장 계약은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 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면적 합산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절사 또는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 하여야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일 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 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월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예정월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후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의 홍보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 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 및 시행사,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신탁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	식표기)	84A	84B	84C	84D	99A	99B	119A	119B	119C	119D	합 계
		국가유공자	5	3	2	1	0	0	0	0	0	0	11
	장	기복무 제대군인	4	1	1	0	0	0	0	0	0	0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	0	0	0	0	0	0	0	0	4
	2	중소기업 근로자	3	1	0	0	0	0	0	0	0	0	4
OIHI	우수선수		2	0	0	0	0	0	0	0	0	0	2
일반 북한이탈주민 (기관추천)		2	0	0	0	0	0	0	0	0	0	2	
특별공급	철	설거주택(이주대책 대상자)	1	1	1	0	0	0	0	0	0	0	3
	장	인천광역시	4	2	1	1	0	0	0	0	0	0	8
	ОH	서울특별시	2	1	1	0	0	0	0	0	0	0	4
	인	경기도	3	1	1	1	0	0	0	0	0	0	6
<b>アトエト・オフト・ユ</b>	인천	광역시 거주자(50%)	15	6	4	2	3	2	2	2	2	2	40
특별공급	나사너가구 <u>서</u> 오트병사 경기도		14	5	3	1	2	1	1	1	1	1	30
신	혼부부	특별공급	52	20	13	6	0	0	0	0	0	0	91
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3	2	1	1	1	0	0	0	0	16
상	d애최초	특별공급	56	21	14	6	0	0	0	0	0	0	97
	합 계		174	66	43	19	6	4	3	3	3	3	32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8호(2023.2.28.)]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1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r 처야에그이 에치그애 1

구분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sup>※ &#</sup>x27;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도 인터넷(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접수가 원칙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함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부적격 처리 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자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내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입주자 선정이 된 이후에도 추후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 통 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하는 경우(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하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 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부적격 처리 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하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자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내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입주자 선정이 된 이후에도 추후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m'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0세대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신청자격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우수선수 : 대한체육협회 교육복지부 - 북하이탈주민·북하이탈주민정착지워사무소 교육기회과 - 철거민(이주대책대상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 (고령자, 장애인 또는 인터넷 취약자는 구비서류 지참 후 견본주택 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당첨자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 선정방법 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 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시(경본주택 방문 접수 포함) 해당기관에 최초 신청한 주택형에 대해서만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 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 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SHTT	등매점	기준	점수	9 <u>                                     </u>							
계	10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4명	35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30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5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성격자 오는 메구지가 구역을 오유한 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지문한 후 구구역자가 된 일(2회 이경 구역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3),(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1조 : 전용면적 85m'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91세대

신청자격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자여야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기을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으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경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160% 이하)	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까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남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내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이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까지 무주택 지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김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함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					
	합구시도입증보험	정시근도자 근도소극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디덴시 등 오득 확인 시점					
	2024.02.22.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 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02.28.)]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 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ul> <li>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li> <li>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li> <li>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li> <li>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li> </ul>							

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순으로 공급 (단, 동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고그	l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O E	iπο -	l T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0.1177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 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3억3,100만원		수 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부동산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무동산 (건물+토지)	이하	토지	- 「농지법」제2조 - 「초지법」제2조 - 공부상 도로, 구 - 종중소유 토지( 계를 입증하는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 나가,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경우	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단, 아래 경우는 제외)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등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주소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02.28.)] [별표3]
- 1.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2.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3.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 약자격을 인정
- 4.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 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전용면적 85m'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9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
  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2.22.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사업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02.28.)]에 따릅니다.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 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 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онто	TE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기준 구분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401 717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자산보유기준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구 픽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 -	「농지법」제2조 「초지법」제23 공부상 도로, 구 종중소유 토지(7 를 입증하는 경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 S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 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선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우	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단, 아래 경우는 제외)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외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동일한 주소인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02.28.)] [별표3]
- 1.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2.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3.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4.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거주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li>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li> <li>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이며 나이는 "만" 나이 기준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li> <li>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람</li> <li>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li>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li> </ul>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 영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 택		전용 85m²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구분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 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 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 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 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민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외)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주민등록표등본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① 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구구곡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1명	10	5명	30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35	2명	15	6명 이상	35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十の行う十		3명	20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입주자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 자동 계산됨)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접수일 및 접수시간	신청방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3.04.(월) (인터넷 : 청약Home 09:00~17:30) (정보취약자 : 견본주택 10:00~14:00)	<ul> <li>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li>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li> <li>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381-2번지</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4.03.05.(호) 09:00~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크린 <b>ㅇㅂ</b>	2순위	2024.03.06.(수) 09:00~17:30	<ul> <li>PC: www.appiyionie.com</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 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 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 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시 유의 사항

- ※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은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며, 접수 시 아래 <u>6번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비서류(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내 제출)</u>를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서류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함),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 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 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민영주택)] <u>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u>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일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대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공급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ul>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 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5 당첨자 발표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장소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4.03.12.(화) • 확인방법	• 일시 - 2024.03.26.(화) ~ 2024.03.29.(금) 10:00 ~ 16:00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신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2번지)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 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는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 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3.12.(화) ~ 2024.03.21.(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24.03.12.(화)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sup>※</sup>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 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 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의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 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철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li> <li>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로 입주자를 선정</li> <li>전용면적 56㎡ 초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작용)로 입주자를 선정</li> <li>전용면적 58㎡ 소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로 주장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li> <li>(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li>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li> <li>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점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li> <li>입주자 선정 시 선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세비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탈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반을 부여합니다.</li> <li>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li> <li>(여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li> <li>1순위: 3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구분 없이 구점으로 선정</li> <li>1건위 기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구분 없이 구점으로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상하며 주차의 방법으로 용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점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여비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등 5분수를 배정하는 추점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수점에 당하다로 작관의 상관로 관리되며 당하는 수점에 참가의사를 표상하면 경우와 본관의 대상적으로 생각하는 취임에 당시대수의 상관로 생각하고 환경으로 보험하는 수점에 참가의사를 표상하다로 관리되며 당하는 수점에 참가의사를 표상하고 유럽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유럽의 방법으로 예비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환경이 당점과 관리되며 대상하는 수점에 함께 당시 기업 등 1년 당하고 유럽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수점에 함께 당시 기업 등 1년 당하고 기업 등 1년 당시 기업 등 1년 당시 기업 등 1년 당시 기업 등 1년 당시 기업 등 1년 당</li></ul>

#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워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 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항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본주택 방문전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 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 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 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 될 수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 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특별공급인 경우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 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 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 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등이 적용됩 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주체에서 통보하는 동·호수 배정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입주자로서의 자격은 자동 소멸된니다.(동·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 등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호 배정일은 추후 통보 예정)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된.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전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 시, 전체면적 주택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
-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봄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
-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 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 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의3호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원 (비수도권 1억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 (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 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자격확인 서류 제출 대상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2024.03.15.(금) ~ 2024.03.22.(금) 10:00 ~ 16:00 (일정 변경 시 추후 개별통보)	•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2번지
예비 입주자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추후 개별 통보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2항(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전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입주자 추첨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을 홈페이지(https://www.dlcon-apt.co.kr)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등(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비서류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내 제출 /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 필수	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b>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b>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 체 포함"하여 발급
공통서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존비속	• 피양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군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인천시)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0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차의 확인서류: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혼일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배우자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11 11 12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0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혼일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0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생애죄소 특별공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배우자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세대원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노부모부양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b>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b>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지부양 지계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
당첨자 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지부양 전기적은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무적격 등보를 증명서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오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이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지글 지 추가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제3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을 일반근로자 당 나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자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과 가장 가 까운 시기 신고한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영 업 자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등 무직자 기타 (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해당직장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①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 및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구 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에
5개 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세무서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책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 [표4]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		유의 사항 등	
	0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제출):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EETD)		0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sup>※「</su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청약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sup>※</sup>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sup>※</sup>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해당 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sup>※</sup>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함.

# 계약체결

### 1

#### ■ 계약체결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방문예약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3.26.(화) ~ 2024.03.29.(금) / 4일간 10:00 ~ 16:00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2번지	- 당첨자 계약체결 시 방문일 예약은 당사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아파트 분양금액	국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 부여	우리자산신탁㈜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 요망
이씨트 문어리기		예정	구디자한한국(#)	(예시: 101동 501호 계약자 → 1010501홍길동)

- ※ 상기 입금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분양대금 관리모계좌 [국민은행 393301-04-103204,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해당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계약서상의 동호수에만 부여된 고유계좌번호(세대별 가상계좌)로 송금메모(기재사항)에 관계없이 이 계약서상의 계약자가 입금(납부)한 것으로 간주함(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분양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단, 무통 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十世	구비 <b>시</b> ㅠ	필수	해당자	크립기판	시ㅠ세출네를 풋 글탑 ㅠ리시팅	
	신분증	0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추가 개별통지 서류		0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본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0		본인	•용도 : 아파트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0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0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0			•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0		• 견본주택에 비치 ※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계약 시 신고의무
대리인 계약시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0	본인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불가
추가제출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위임장		0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 1)	대리인 신분증, 인장		0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 하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인지세법」제1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균등하게 분담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수입인지를 선구매 후 계약서 발행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 50%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 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 (☎044-204-3372~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현장수납 불가) 납부하고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당첨자가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모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금된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 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2.)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시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설계 및 시공관련 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납부기한 내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지정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타 금융기관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미적용)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대출 금융기관 확정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무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적격 대출시 대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당월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 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당월 사업주체의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단, 당월 대출 대납 실행일전 입주지정일이 시 작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병"이 납부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는 "을"이 부담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 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 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및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b></b>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шп	
(약식표기)	총공급금액	계약시	2024.05.29	입주지정일	비고	
84A	4,936,000	493,600	987,200	3,455,200		
84B	4,386,000	438,600	877,200	3,070,200		
84C	7,138,000	713,800	1,427,600	4,996,600		
84D	4,547,000	454,700	909,400	3,182,900		
99A	6,447,000	644,700	1,289,400	4,512,900		
99B	8,457,000	845,700	1,691,400	5,919,900		
119A/B	6,987,000	698,700	1,397,400	4,890,900		
119C/D	7,201,000	720,100	1,440,200	5,040,700		

####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비	국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우리자산신탁㈜

-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분양대금 관리모계좌 [국민은행 393301-04-103217,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해당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계약서상의 동호수에만 부여된 고유계좌번호(세대별 가상계좌)로 송금메모(기재사항)에 관계없이 이 계약서상의 계약자가 입금(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3호 계약자 → '1030703홍길동')

#### ■ 발코니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일부)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기존 시공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다용도실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제외)로 산정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제공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 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세대분전반내 차단기 수량이 감소하며, 등기구의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시행자 겸 분양공급자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 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혹통 선혹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혹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세대분전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옵션 미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에 설치된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주택전시관용입니다. 본 공사시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협력업체 입찰 결과에 따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자 겸 분양공급자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 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 법령상 발코니가 하향식 피난구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 추가 선택 품목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비확장시 설치공간 및 확장제공품목의 차이로 인해 발코니 확장형 계약세대만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84C와 99B 타입은 침실1 가변 선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평면에 따라 일부 추가선택품목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 선택형]

주택형(m²)	가변 선택	판매가	비고	
84C	확장 기본형(침실1, 드레스룸 분리형)		택1	
040	일1, 드레스룸 통합형 무상	무상선택	믝	
99B	확장 기본형(침실1, 알파공간 분리형)		택1	
990	침실1, 알파공간 통합형	무상선택	٦-	

- ▶ 84C형 침실1, 드레스룸 통합형 무상옵션 선택시 기존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동체감지기(동체감지기는 피로티포함 1층,2층,최상층 세대에 해당)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99B형 침실1, 알파공간 통합형 무상옵션 선택시 기존 알파공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배선기구(콘센트 및 정보통신 인출구), 화재감지기, 동체감지기(동체감지기는 피로티포함 1층,2층,최상층 세대에 해당), 디퓨 저,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위 · 워 \/∆T 포항\

1 시스템에어컨

1. AI— Ballat F							(211.2, 7)	~: <del>_</del> /
품목	주택 형(m²)	선택		설치유형		판매가	비고	
			LG	ALT-1	거실 + 침실1	3,600,000	▷ 에어컨 모델명	
시스템 에어컨	84A	일반형	전	ALT-2	거실 + 침실1 + 침실2	5,300,000	거실(RNW0720C2WP), 침실1(RNW0320C2WP), 침실2,3(RNW0160K2WP)	택1
			자	ALT-3	거실 + 침실1 + 침실3	5,300,000	▷ 실외기 모델명	

			ALT-4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500,000	ALT1 (RPUQ0403S2R), ALT2,3,4(RPUQ0504S2R)		
			ALT-5	거실 + 침실1	3,800,000	▷ 에어컨 모델명		
			ALT-6	거실 + 침실1 + 침실2	5,500,000	거실(RNW0721C2SP), 침실1(RNW0321C2SP), 침실2,3(RNW0161K2SP)		
		프리미엄형	ALT-7	거실 + 침실1 + 침실3	5,500,000	▷ 실외기 모델명		
			ALT-8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700,000	ALT1 (RPUQ0403S2R), ALT2,3,4(RPUQ0504S2R)		
			ALT-1	거실 + 침실1	3,600,000	▷ 에어컨 모델명		
		일반형	ALT-2	거실 + 침실1 + 침실2	5,300,000	거실(RNW0720C2WP), 침실1(RNW0320C2WP), 침실2,3(RNW0160K2WP)		
		교건 8	ALT-3	거실 + 침실1 + 침실3	5,300,000	▷ 실외기 모델명		
	84B		ALT-4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500,000	ALT1 (RPUQ0403S2R), ALT2,3,4(RPUQ0504S2R)	<u>택1</u>	
	040		ALT-5	거실 + 침실1	3,800,000	▷ 에어컨 모델명	7'	
		프리미엄형	ALT-6	거실 + 침실1 + 침실2	5,500,000	거실(RNW0721C2SP), 침실1(RNW0321C2SP), 침실2,3(RNW0161K2SP)		
		1180	ALT-7	거실 + 침실1 + 침실3	5,500,000	▷ 실외기 모델명		
			ALT-8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700,000	ALT1 (RPUQ0403S2R), ALT2,3,4(RPUQ0504S2R)		
			ALT-1	거실 + 침실1	3,600,000	│ ▷ 에어컨 모델명		
		일반형	ALT-2	거실 + 침실1 + 침실2	5,300,000	거실(RNW0720C2WP), 침실1(RNW0320C2WP), 침실2,3(RNW0160K2WP)		
			ALT-3	거실 + 침실1 + 침실3	5,300,000	│ ▷ 실외기 모델명		
			ALT-4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500,000	ALT1 (RPUQ0403S2R), ALT2,3,4(RPUQ0504S2R)	EN4	
	84C		ALT-5	거실 + 침실1	3,800,000	▷ 에어컨 모델명	택1	
		ㅠ긔미어쳥	프리미엄형	ALT-6	거실 + 침실1 + 침실2	5,500,000	거실(RNW0721C2SP), 침실1(RNW0321C2SP), 침실2,3(RNW0161K2SP)	
		=49188	ALT-7	거실 + 침실1 + 침실3	5,500,000	▷ 실외기 모델명		
			ALT-8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700,000	ALT1 (RPUQ0403S2R), ALT2,3,4(RPUQ0504S2R)		
			ALT-1	거실 + 침실1	3,600,000	▷ 에어컨 모델명		
		이바성	ALT-2	거실 + 침실1 + 침실2	5,300,000	거실(RNW0720C2WP), 침실1(RNW0320C2WP), 침실2,3(RNW0160K2WP)		
		일반형	ALT-3	거실 + 침실1 + 침실3	5,300,000	▷ 실외기 모델명		
	0.40		ALT-4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500,000	ALT1 (RPUQ0403S2R), ALT2,3,4(RPUQ0504S2R)	택1	
	84D		ALT-5	거실 + 침실1	3,800,000	▷ 에어컨 모델명		
		프리미엄형	ALT-6	거실 + 침실1 + 침실2	5,500,000	거실(RNW0721C2SP), 침실1(RNW0321C2SP), 침실2,3(RNW0161K2SP)		
		1-10-6	ALT-7	거실 + 침실1 + 침실3	5,500,000	▷ 실외기 모델명		
			ALT-8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700,000	ALT1 (RPUQ0403S2R), ALT2,3,4(RPUQ0504S2R)		
			ALT-1	거실 + 주방 + 침실1	5,300,000			
			ALT-2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6,500,000	▷ 에어컨 모델명 거실(RNW0720C2WP), 주방, 침실2(RNW0160K2WP), 침실1(RNW0320C2WP),		
		일반형	ALT-3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3	6,500,000	침실3(RNW0200K2WP), 알파룸(RNW0120K2WP)		
	99A		ALT-4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200,000	▷ 실외기 모델명 ALT1,2,3,4(RPUQ0504S2R), ALT5(RPUQ0604S2R)	택1	
			ALT-5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공간	9,400,000			
		프리미엄형	ALT-6	거실 + 주방 + 침실1	5,500,000	▷ 에어컨 모델명		
			ALT-7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6,700,000	거실(RNW0721C2SP), 주방, 침실2(RNW0161K2SP), 침실1(RNW0321C2SP),		

		ALT-8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3	6,700,000			
		ALT-9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400,000	침실3(RNW0201K2SP), 알파룸(RNW0121K2SP)  ▷ 실외기 모델명		
		ALT-1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공간	9,600,000	ALT1,2,3,4(RPUQ0504S2R), ALT5(RPUQ0604S2R		
		ALT-1	거실 + 주방 + 침실1	5,300,000			
		ALT-2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6,500,000	<ul><li>→ 에어컨 모델명</li><li>거실(RNW0720C2WP), 주방, 침실3(RNW0160K2WP),</li></ul>		
	일반형	ALT-3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3	6,500,000	침실1(RNW0320C2WP), 침실2(RNW0200K2WP), 알파룸(RNW0120K2WP)		
		ALT-4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200,000	▷ 실외기 모델명           ALT1,2,3,4(RPUQ0504S2R), ALT5(RPUQ0604S2R)		
99B		ALT-5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공간	9,400,000	ALI 1,2,5,4(N OQUOV+32IV), ALI 3(N OQUOV+32IV)	침실1, 알파공간 통합형 세대 선택불가	- 택1
996		ALT-6	거실 + 주방 + 침실1	5,500,000	─ ▷ 에어컨 모델명		
		ALT-7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6,700,000	거실(RNW0721C2SP), 주방, 침실3(RNW0161K2SP),		
	프리미엄형	ALT-8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3	6,700,000	침실1(RNW0321C2SP), 침실2(RNW0201K2SP), 알파룸(RNW0121K2SP)		
		ALT-9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400,000	▷ 실외기 모델명 — ALT1,2,3,4(RPUQ0504S2R), ALT5(RPUQ0604S2R		
		ALT-1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공간	9,600,000	ALTI,2,5,4(1) OCCOSOTSEN, ALTS(1) OCCOSOTSEN	침실1, 알파공간 통합형 세대 선택불가	
		ALT-1	거실 + 주방 + 침실1	5,400,000			
		ALT-2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6,600,000	<ul><li>▷ 에어컨 모델명</li><li>거실(RNW0720C2WP), 주방, 침실2,3(RNW0200C2WP), 침실1(RNW</li></ul>	V0400C2WP).	
	일반형	ALT-3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3	6,600,000	알파룸(RNW0120K2WP)	10 100 CL 111 //	
		ALT-4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300,000	<ul><li>▷ 실외기 모델명</li><li>ALT1,2,3(RPUQ0504S2R), ALT4,5(RPUQ0604S2R)</li></ul>		
119A/B		ALT-5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공간	9,500,000			택1
		ALT-6	거실 + 주방 + 침실1	5,600,000			
		ALT-7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6,800,000	<ul><li>→ 에어컨 모델명</li><li>거실(RNW0721C2SP), 주방, 침실2,3(RNW0201C2SP), 침실1(RNW04010</li></ul>	)401C2SP),	
	프리미엄형	ALT-8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3	6,800,000	알파룸(RNW0121K2SP)  ▷ 실외기 모델명		
		ALT-9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500,000	ALT1,2,3(RPUQ0504S2R), ALT4,5(RPUQ0604S2R)		

		ALT-1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공간	9,800,000		
		ALT-1	거실 + 주방 + 침실1	5,400,000		
		ALT-2	!	▷ 에어컨 모델명 거실(RNW0720C2WP), 주방, 침실2,3(RNW0200C2WP), 침실1(RNW0400C2WP),		
일	일반형	ALT-3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3	6,600,000	알파룸(RNW0120K2WP)	
		ALT-4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300,000	▷ 실외기 모델명           ALT1,2,3(RPUQ0504S2R), ALT4,5(RPUQ0604S2R)	
119C/D		ALT-5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공간	9,500,000		- 택1
119C/D		ALT-6	거실 + 주방 + 침실1	5,600,000		=======================================
		ALT-7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6,800,000	▷ 에어컨 모델명 거실(RNW0721C2SP), 주방, 침실2,3(RNW0201C2SP), 침실1(RNW0401C2SP),	
프리	리미엄형	ALT-8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3	6,800,000	알파룸(RNW0121K2SP)	
		ALT-9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500,000	▷ 실외기 모델명 ALT1,2,3(RPUQ0504S2R), ALT4,5(RPUQ0604S2R)	
		ALT-1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공간	9,800,000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일반형과 프리미엄형 제품 중 선택가능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2개소 거실, 침실1) 및 에어컨용 콘센트(침실1)는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판매가격에는 기본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되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일반 에어컨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벽걸이형, 스탠드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부위의 (거실)우물천장 크기가 변경될 수 있고, 실외기공간 및 발코니에 응축수 드레인 및 냉매배관 또는 배관용 슬리브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콘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는 미설치 될 예정입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시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 가전사별,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 시 별도로 세부 안내 예정입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추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일부세대는 옵션 미선택 세대에 설치되는 냉매박스(거실, 침실1, 실외기실)와 콘센트가 설치 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에 확인 바랍니다.

2. 붙박이 가구류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m²)	설치위치		설치유형	판매가	В	Z									
			ALT-1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400,000											
	84A		ALT-2	오픈형 신발장 + 신발케어기기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100,000	택1										
			ALT-1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400,000	-11.										
	84B		ALT-2	오픈형 신발장 + 신발케어기기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100,000	택1										
	0.16		ALT-1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400,000	Ella										
	84C		ALT-2	오픈형 신발장 + 신발케어기기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100,000	택1	-기본제공 신발장과의									
		•	ALT-1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400,000	-11.	차인액 반영									
오픈형 신발장	84D	현관	ALT-2	오픈형 신발장 + 신발케어기기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100,000	택1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후 신발케어기기 _ 옵션 추가 선택시									
			ALT-1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400,000	-11.	답는 무기 분칙시   오픈형   신발장(옵션)에서									
	99A		ALT-2	오픈형 신발장 + 신발케어기기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100,000	택1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99B	000	000		ALT-1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400,000									
			ALT-2	오픈형 신발장 + 신발케어기기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100,000	택1										
	119A/B 119C/D	1101 (5		ALT-1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400,000										
			ALT-2	오픈형 신발장 + 신발케어기기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100,000	택1										
			-								<i> </i>	ALT-1	오픈형 신발장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400,000		
			ALT-2	오픈형 신발장 + 신발케어기기 (오픈장 상부 LED조명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마감 + 신발살균기 + 퀵라인선반 + 신발청소기)	1,100,000	택1										
	84A		인조대리석(	(ALOS 8) (EDIS + EMISSIE 8) 11	1,150,000											
	84B		인조대리석(	(MMA) 상판 마감 + 하부장 + 손빨래싱크볼	1,150,000											
	84C		인조대리석(	MMA) 상판 마감 + 하부장 + 손빨래싱크볼	1,150,000											
손빨래 하부장	84D	LIO L YI	인조대리석(	MMA) 상판 마감 + 하부장 + 손빨래싱크볼	1,400,000											
근절대 아구경	99A	다용도실	인조대리석(	(MMA) 상판 마감 + 하부장 + 손빨래싱크볼	1,150,000											
	99B		인조대리석(	MMA) 상판 마감 + 하부장 + 손빨래싱크볼	1,150,000											
	119A/B		인조대리석(	MMA) 상판 마감 + 하부장 + 손빨래싱크볼	1,150,000											
	119C/D		인조대리석(	MMA) 상판 마감 + 하부장 + 손빨래싱크볼	1,150,000											
침실1+드레스룸	844	침실1/	ALT-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경량벽 설치 포함)	1,900,000		택1									
가구	가구 84A		ALT-2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890,000	,	즉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ALT-3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2,500,000			
		A1 T 4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6.050.000			
		ALT-4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6,050,000			
		ALT-5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7,750,000			
			+ 오픈형 선반장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 7. 5 6/6 6 6			
		ALT-6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8,350,000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ALT-7	+ 오픈형 선반장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10,050,000			
		ALT-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경량벽 설치 포함)	1,900,000			
		ALT-2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1,050,000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1,700,7000			
		ALT-3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2,650,000			
	 침실1/	41.7.4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6.250.000			
84B		ALT-4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6,350,000	택 <sup>'</sup>	I	
	드레스룸	ALT-5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6,400,000			
			ALIS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0,400,000		
			ALT-6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8,650,000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_		
		ALT-7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8,700,000			
		ALT-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경량벽 설치 포함)	1,900,000			
		ALT-2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950,000			
				,			
		ALT-3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2,530,000			
	 침실1/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F 050 000			
84C		ALT-4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침실1, 드레스룸 분리형 세대)	5,850,000	평면선택형에 따른	택1	
	드레스룸	ALI-4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6,700,000	택1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침실1, 드레스룸 통합형 세대)	0,700,000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8,150,000	명면선택형에 따른		
		ALT-5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침실1, 드레스룸 분리형 세대)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1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침실1, 드레스룸 통합형 세대)	9,000,000	택1		
		ALT-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경량벽 설치 포함)	1,850,000			
		ALT-2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1,050,000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		
		ALT-3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2,630,000			
	침실1/	ALT-4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6,350,000			
84D	드레스룸	7 (=1 1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0,550,000	택 <sup>-</sup>		
		ALT-5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6,400,000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		
		ALT-6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8,650,000			
		ALT 7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8 700 000	1		
		ALT-7	시는 지어에(현실되었는 중단) + 통취임(CO프니컬다 5년(SOMIDPU) 포함)	8,700,000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ALT-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경량벽 설치 포함)	2,000,000									
		ALT-2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1,030,000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ALT-3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2,650,000									
00.4	침실1/	ALT-4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6,100,000	FILA								
99A	드레스룸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택1								
		ALT-5	+ 오픈형 선반장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7,850,000									
		ALT-6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8,400,000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ALT-7	+ 오픈형 선반장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10,150,000									
		ALT-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경량벽 설치 포함)	1,900,000									
		ALT-2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950,000									
			ALT-3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2,530,000								
		7.21 3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2,330,000									
99B	침실1/	ALT-4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5,900,000	택1								
	드레스룸	ALT-5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7,200,000	, ·								
		, LI 3	+ 오픈형 선반장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7,200,000									
		ALT-6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8,200,000									
		ALT-7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9,500,000									
			+ 오픈형 선반장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ALT-1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키큰장 포함/경량벽 설치 포함)	2,250,000	
		ALT-2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1,050,000									
		ALT-3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키큰장 포함)	3,000,000									
	<b>4111</b>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 ,									
119A/B	침실1/ 드레스룸			ALT-4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6,550,000	택1						
				드레스룸	드레스룸	드레스룸		드레스룸	ALT-5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6,600,000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ALT-6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8,850,000									
		ALT-7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8,900,000									
		ALT-1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키큰장 포함/경량벽 설치 포함)	2,300,000									
		ALT-2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1,030,000									
1100/0	침실1/	ALT-3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키큰장 포함)	3,000,000	CU.A								
119C/D	드레스룸		+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경량벽 포함)+시스템선반) + 드레스룸 입구 벽패널 마감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불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포함)	-,,	택1								
		ALT-4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5,750,000									
		ALT-5	와이드 화장대(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붙박이장(LG스타일러 5벌(S5MBPU) 포함)	8,050,000									
		, 3	+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5,050,000									

	84A		붙박이장	1,00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84B		붙박이장	1,00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84C		붙박이장	1,00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침실2 붙박이장	84D	_ - 침실2	붙박이장	1,15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99A	6 24	붙박이장	1,15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99B		붙박이장	1,15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119A/B		붙박이장	1,15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119C/D		붙박이장	1,15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84A		붙박이장	1,15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84B		붙박이장	1,15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84C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시스템선반)	550,000	
침실3 붙박이장	84D	침실3	붙박이장	1,15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99A		붙박이장	1,15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99B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시스템선반)	660,000	
	119A/B		붙박이장	1,15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119C/D		붙박이장	1,150,000	가구 측면 경량벽 포함
			ALT-1 장식장(유리도어)	1,350,000	
알파공간 가구	119C/D	알파공간	ALT-2 붙박이장	650,000	택1
			ALT-3 시스템 선반(의류 보관용)	500,000	
침실1 드레스룸 도어	84C	드레스룸	1도어 슬라이딩( 금속프레임 / 그레이 불투명 유리 )	1,050,000	-침실1, 드레스룸 통합형 세대 선택 불가
복도 수납장	119A/B	복도	복도 수납장(청소기 수납공간(콘센트 설치) 포함)	1,000,000	
주방 수납장	84C	주방	주방 팬트리장(W=1000)	2,000,000	
To THO	99B	To	주방 팬트리장(W=1000) + 키큰장(W=500)	2,180,000	

- ▶ 불박이 가구(주방포함) 옵션선택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 붙박이 가구 옵션 미선택시 해당부위는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 붙박이 가구 규격은 평면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붙박이 가구 옵션 선택시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기본형 신발장에 설치되는 우산걸이 및 다용도렉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신발케어기기(신발살균기, 퀵라인선반, 신발청소기)를 추가로 옵션 선택할 수 있으며, 케어기기 옵션 미선택시 오픈형 신발장(옵션)내 해당기기 설치부위에 선반이 설치됩니다.
-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 후 추가 선택품목인 신발살균기, 신발청소기, 퀵라인 선반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미선택시 기본형 신발장으로 설치되며, 오픈형 신발장 판매가격 산정시 기본형 신발장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현관 오픈형 신발장(옵션) 내 신발케어기기를 추가로 옵션 선택할 경우 오픈형 신발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상부 LED 조명 및 신발살균기, 신발청소기 추가 옵션 선택시 전원공급 관련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가구내 LED 조명은 현관 센서와 연동되어 현관 등기구와 같이 작동되며, 별도의 스위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시 신발장에 설치되는 LED 조명용 배전반이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며, 해당부분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레이아웃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침실1 및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시 설치품목은 설치공간 및 설치위치의 차이로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옵션 선택시 설치품목은 설치공간 및 설치위치의 차이로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 ▶ 침실1 화장대 또는 워크인 드레스룸 단독 옵션 선택시 드레스룸 입구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화장대+워크인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에만 드레스룸 입구 벽이 패널로 마감됩니다.
- ▶ 침실1 붙박이장 또는 화장대+워크인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벽패널 마감은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 84B, 84D, 119A/B타입의 경우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추가로 선택가능한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시스템 선반)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 설치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의류관리기를 추가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의류관리기 공간으로 제공되며, 해당부위는 가구 뒤판이 설치되지 않고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추가 선택 가능한 의류관리기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가구패널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침실1 워크인 드레스룸/화장대+워크인 드레스룸 또는 붙박이장(추가 옵션품목인 오픈형 선반장 및 워크인 드레스룸 포함) 옵션 선택시 해당타입 가구 설치부위(침실1/드레스룸) 창호의 커텐박스 크기(폭)가 변경될 수

#### 있습니다.

- ▶ 침실1 화장대 또는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화장대 크기는 설치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주택형별로 크기 및 설치 등기구 수량과 소비전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가구에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통한 콘센트는 미설치 됩니다.
- ▶ 84C타입의 경우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드레스룸 벽패널 마감범위가 평면 선택형(침실1, 드레스룸 분리형/침실1, 드레스룸 통합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 침실1 화장대/워크인 드레스룸/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스위치, 콘센트, 배선기구, 다운라이트, 화재감지기 등)
- ▶ 침실2/침실3 붙박이장(84C, 99B 침실3 제외) 옵션 선택시 가구설치를 위한 경량벽체가 가구 측면에 설치되며, 가구 설치로 인한 공간협소로 인해 침실문 옆에 설치된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 콘센트가 가구 측면 경량벽 체로 이동 설치된니다
- ▶ 84C와 99B타입은 침실3에 워크인 드레스룸(가구도어+시스템 선반) 옵션 선택이 가능하며, 설치공간의 제약으로 붙박이장 옵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워크인 드레스룸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 불박이 가구류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19C/D타입은 알파공간에 장식장 또는 불박이장, 시스템 선반 옵션 선택이 가능하며, 시스템 선반 옵션 선택시 알파공간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 84C타입에 추가선택 가능한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는 도어특성상 벽체와 이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침실1. 드레스룸 통합형 평면 선택세대는 경량벽 삭제로 인해 해당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 119A/B 타입에 추가선택 가능한 복도 수납장은 청소기 수납공간(해당부분 가구지판 미설치)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부위에 청소기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일부 청소기의 경우 공간의 제 약으로 인해 수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타입별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시스템 선반은 본 공사시 수납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손빨래 하부장 옵션 선택시 방우형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 워크인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화재감지기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2 청과 즈므

3. 현관 중문					(단위 : 원	, VAT 포함)
품목	주택형(m²)	설치위치	설치유형	판매가	비고	
현관중문	전 주택형	현관	3연동슬라이딩 수동중문( 금속프레임 / 그레이 불투명 유리 )	1,800,000	경량벽 삭제비용 차감	EH 1
2000	2 T 4 8	원인	3연동슬라이딩 자동중문( 금속프레임 / 그레이 불투명 유리 )	2,800,000	경량벽 삭제비용 차감	= 1

- ▶ 현관중문은 수동 또는 자동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 시 벽패널 또는 도배지, 천장지로 마감됩니다.
-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 시 천장몰딩, 가구, 디딤판, 벽패널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신발장 측면이 경량벽으로 마감됩니다.
-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중문 설치부위 신발장 케이싱 너비가 변경됩니다.
- ▶ 현관중문 옵션 선택 시 설치유형에 상관없이 화재감지기가 추가로 설치되며, 자동중문 옵션 선택시에는 추가로 전원공급 관련 증기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사양(제조사, 프레임 및 유리, 작동방식 등)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중문 자동 슬라이딩 도어 옵션 선택시 도어 스위치는 본 공사시 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마감재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m²)	설치 위치			설치유형	비고																													
			확장기본형	ALT1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지브롤터 )	830,000																													
주방가구 상판 및	84A			세대	ALT2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830,000	[확장기본형 세대]																											
		84A	84A	84A	84A	84A		아일랜드장	ALT1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지브롤터 )	990,000	확장 기본제공 주방벽 락패널 마감 및 주방가구 인 조대리석(MMA) 상판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1																						
벽체 마감		주방	주 <b>방</b>	주방	옵션선택 세대	ALT2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990,000	[아일랜드장 옵션선택 세대]																										
엔지니어드 스톤		'0	10	1 10				10		10		10		10	, ,	, ,	10	10	10	10	, 0	10	10	10	10	10	, 0	10	10	확장기본형	ALT1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지브롤터 )	1,090,000	-확장 기본제공 주방벽 락패널 마감 및 주방가구 인	
마감											세대	ALT2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1,090,000	조대리석(MMA) 상판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Ella.																			
	84B	84B	아일랜드장	ALT1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지브롤터 )	1,250,000	-아일랜드장 옵션선택시 아일랜드장에 기본 설치되는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택1																											
			옵션선택	ALT2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1,250,000	한포테니크(IVIIVIA) 8년 비심파의 사원적 단당																												

			세대				
			확장기본형 AL	T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롯데 지브롤터)	1,400,000		
			세대 AL	72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롯데 알파마요)	1,400,000		
	84C		아일랜드장 AL	71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롯데 지브롤터)	1,550,000		택1
			옵션선택 AL	'2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1,550,000		
			확장기본형 AL	7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롯데 지브롤터 )	970,000		
			세대 AL	'2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롯데 알파마요)	970,000		
	84D		아일랜드장 AL	T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지브롤터 )	1,150,000		택1
			옵션선택 AL	'2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1,150,000		
			확장기본형 AL	7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지브롤터 )	980,000		
			세대 AL	· 구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980,000		
	99A		아일랜드장 AL	7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롯데 지브롤터)	1,150,000		택1
			옵션선택 AL	'Z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1,150,000		
			학장기본형 AL	7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지브롤터 )	1,690,000		
			세대 AL	· 구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1,690,000		
	99B		아일랜드장 AL	7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롯데 지브롤터)	1,800,000		택1
			옵션선택 AL	'Z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1,800,000		
			확장기본형 AL	71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롯데 지브롤터 )	1,040,000		
			세대 AL	· 구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1,040,000		택1
	119A/B		아일랜드장 AL	7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롯데 지브롤터)	1,250,000		7'
			옵션선택 세대 AL	'Z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1,250,000		
			확장기본형 AL	7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지브롤터 )	920,000		
			세대 AL	· 구방 벽 +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920,000		
	119C/D		아일랜드장 AL	7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롯데 지브롤터)	1,150,000		택1
			옵션선택 AL	'2 주방 벽 + 주방가구 상판 + 아일랜드장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 롯데 알파마요 )	1,150,000		
	044		ALT-1	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	2,950,000		
	84A		ALT-2	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	2,950,000		
	84B		ALT-1	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	2,730,000		
	040		ALT-2	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	2,730,000		
	84C		ALT-1	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	2,300,000		
	010		ALT-2	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	2,300,000		
거실+주방 아트월	84D	거실	ALT-1	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	2,660,000		
세라믹 패널 마감		/주	ALT-2	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  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	2,660,000	기본제공 아트월 디자인월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99A, 119A/B타입은	99A	/ '   방	ALT-1	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	1,660,000		주택
거실만 해당	25-		ALT-1	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	2,430,000		형별 태1
	99B		ALT-2	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	2,430,000		택1
	110A/D		ALT-1	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	1,830,000		
	119A/B		ALT-2	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	1,830,000		
	119C/D		ALT-1	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	2,660,000		
	1130,0		ALT-2	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	2,660,000		
거실+주방 아트월	84A	거실	ALT-1	SALTY ASH(솔티 애쉬)	850,000		
에디톤 패널		/주	ALT-2	VELVET QUARTZ(벨벳 쿼츠)	850,000	기본제공 아트월 디자인월 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99A, 119A/B타입은	84B	방	ALT-1	SALTY ASH(솔티 애쉬)	790,000		

			ALT-2	VELVET QUARTZ(벨벳 쿼츠)	790,000		
	215		ALT-1	SALTY ASH(솔티 애쉬)	660,000		
	84C		ALT-2	VELVET QUARTZ(벨벳 쿼츠)	660,000		
			ALT-1	SALTY ASH(솔티 애쉬)	760,000		
	84D		ALT-2	VELVET QUARTZ(벨벳 쿼츠)	760,000		
			ALT-1	SALTY ASH(솔티 애쉬)	470,000		
거실만 해당	99A		ALT-2	VELVET QUARTZ(벨벳 쿼츠)	470,000		
	200		ALT-1	SALTY ASH(솔티 애쉬)	700,000		
	99B		ALT-2	VELVET QUARTZ(벨벳 쿼츠)	700,000		
			ALT-1	SALTY ASH(솔티 애쉬)	520,000		
	119A/B		ALT-2	VELVET QUARTZ(벨벳 쿼츠)	520,000		
			ALT-1	SALTY ASH(솔티 애쉬)	760,000		
	119C/D		ALT-2	VELVET QUARTZ(벨벳 쿼츠)	760,000		
	84A			1   1   1   1   1   1   1   1   1   1	770,000		
	84B			서실 1개면 디자인 패널 마감	770,000		
	84C				1,080,000		
거실벽	84D			서실 1개면 디자인 패널 마감	800,000	! 기본제공 도배 마감(걸레받이 설치)과의 차인액	
디자인 패널 마감	99A	거실		H실 1개면 디자인 패널 마감	800,000	반영	
디자진 페르 미급	99B			H실 1개면 디자인 패널 마감	1,100,000		
	119A/B			서실 1개면 디자인 패널 마감	820,000		
	119C/D			H실 1개면 디자인 패널 마감	820,000		
	84A			/주방일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550,000		
	84B			/주방일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500,000		
	84C			/주방일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570,000		
세대 공용부	84D	거실		/구앙일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530,000	- 차감 : 몰딩옵션 설치부위 기본제공 천장몰딩	
픽쳐레일 일체형	99A	/복		/ㅜㅎㄹㅜ/ ㅋ시네ㄹ 르세ㅎ ㄹㅎ )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500,000	- 추가 :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설치부위 천장보강	
몰딩	99B	도		/ 구시내로 르세당 로당 /주방일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630,000	비용	
	119A/B			(ㅜㅎㄹㅜ) 국시대로 글세상 글ㅎ )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470,000		
	119A/B			/ 국시대로 크레딩 로딩 /주방일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540,000		
	1130/10		MIN 001(12/14)	71021) 74442 240 20	340,000		
	044		ALT-1	거실 및 주방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하든도어(침실1/참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9,360,000		FH 1
세대 공용부 마감 특화	84A		ALT-2	거실 및 주방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히든도어(침실1/침실2/침실3/옥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9,360,000		택 1
*거실+주방 아트월	84B	거실	ALT-1	거실 및 주방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히든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9,070,000	- 차감 : 기본제공 아트월 디자인월 마감/ 거실벽 도배 마감/일반 목창호 (침실1,2,3/욕실1)/패널설치부위 천장 몰딩	택 1
세라믹 패널 또는 에디톤 패널 마감/ 거실벽 디자인 패널	040	/주 방/	ALT-2	거실 및 주방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히든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9,070,000	- 추가 :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설치부위 천장보강 비용 / 히든도어 마감재 설치비용 등	
마감/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옵션과	84C	복도	ALT-1	거실 및 주방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하든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9,410,000	(히든도어 : 마감재 / 하드웨어 / 손끼임방지 / 핸 들 / 도어재 두께 변경 / 욕실1 도어씰 변경 및 금속 재료분리대 설치 등 )	택 1
동시선택 불가 *99A, 119A/B타입은 주방 아트월 미설치	040		ALT-2	거실 및 주방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히든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9,410,000	마크 세프리막테 콘센 O /	I
	84D		ALT-1	거실 및 주방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하든도어(침실1/참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물딩	9,000,000		택 1

			ALT-2	거실 및 주방 아트월 / 거설1개면 세라믹패널(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히든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9,000,000						
	99A		ALT-1	거실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히든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8,120,000		택 1				
	33A		ALT-2	거실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히든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8,120,000						
	000		ALT-1	거실 및 주방 아트월 / 거살1개면 세라믹패널(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히든도어(침살1/침살2/침살3/욕살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9,960,000		EH 4				
	99B		ALT-2	거실 및 주방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히든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9,960,000		택 1				
	119A/B		ALT-1	거실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히든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8,290,000		택 1				
	TTSAYB		ALT-2	거실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CALACATTA MIX NATURAL(카라카따 믹스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하든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8,290,000		7 '				
	119C/D		ALT-1	거실 및 주방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DUOMO NATURAL(두오모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하든도어(참실1/참실2/참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	9,180,000		택 1				
	11900		ALT-2	거실 및 주방 아트월 / 거실1개면 세라믹패널(CALACATTA MIX NATURAL(카라캬따 믹스 네츄럴)마감 + 거실창 주변 벽면 디자인 패널 마감 + 히든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1)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물딩	9,180,000		-; '				
			ALT-1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1,46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ALT-2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1,460,000	기존세ㅎ 중국 아이트니트 중비구되의 시간국 단중					
	84A		ALT-3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침설1(드레스룸)+침실2+침실3)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1,950,000	-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 추가 :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택1				
							ALT-4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레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청살(드레스룸)+침실2+침실3) 광폭 동조 플레스 강마루(노르딕 플레스)	1,950,000	스퀘어 강마루 사이 재료분리대	
			ALT-1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1,37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ALT-2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1,370,000						
	84B		ALT-3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참실 (침실1(드레스룸)+참실2+참실3)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1,830,000	-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 추가 :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택1				
단위세대			ALT-4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천살1(드레스룸)+침실2+침실3)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1,830,000	스퀘어 강마루 사이 재료분리대					
바닥마감		전실	ALT-1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드레스룸))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1,26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1 1 1 1			ALT-2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드레스룸))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1,260,000		4				
	84C		ALT-3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드레스룸))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1,650,000	-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 추가 :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택1				
			ALT-4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청살1(드레스룸)+침실2+침실3(드레스룸))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1,650,000	스퀘어 강마루 사이 재료분리대					
			ALT-1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1,41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84D		ALT-2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1,410,000	.2 .3 0 1 1 - 1 - 0 11 - 1 - 1 - 1 - 1	]				
			ALT-3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침설1(드레스룸)+침실2+침실3)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1,830,000	-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택1				
			ALT-4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레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침설1(드레스룸)+침실2+침실3)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1,830,000	- 추가 :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사이 재료분리대					

			ALT-1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1,62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ALT-2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1,620,000	- 기존제공 용목 아이브리트 성마구와의 자연핵 단영 	
	99A		ALT-3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침실1(드레스룸)+참실2+참실3+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2,150,000	-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 추가 :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택1
			ALT-4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뤼(노르딕 플렉스)	2,150,000	구가: 영국 중소 클릭스 정마무와 클릭스 스퀘어 강마루 사이 재료분리대	
			ALT-1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드레스룸)+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1,550,000	71H717 71F 101H71F 71F20101 11001 H10	
			ALT-2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췭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드레스룸)+일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무(노르딕 플렉스)	1,550,000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99B		ALT-3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침실1(드레스룸)+참실2+참실3(드레스룸)+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뤼(모던 플렉스)	2,050,000	-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 추가 :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택
			ALT-4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침실1(드레스룸)+참실2+침실3(드레스룸)+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2,050,000	- 구기 : 중국 중포 글국  중미구되 글국 스퀘어 강마루 사이 재료분리대	
		1	ALT-1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1,61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ALT-2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1,610,000	- 기존제공 용목 아이브리트 성마구와의 자연핵 단영 	
	119A/B		ALT-3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2,150,000	-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탄
			ALT-4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2,150,000	추가 :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사이 재료분리대	
		1	ALT-1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1,880,000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와의 차인액 반영	
			ALT-2	전체실 (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1,880,000	- 기존제공 용목 아이브리트 성마구와의 자연핵 단영 	
	119C/D		ALT-3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모던 플렉스)	2,460,000	- 차감 : 기본제공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 - 추가 :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Ē
			ALT-4	공용부 (거실+주방/식당+복도)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 침실 (침실1(드레스룸)+침실2+침실3+알파공간)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노르딕 플렉스)	2,460,000	구기 : 영국 영소 클릭스 정미부와 클릭스 스퀘어 강마루 사이 재료분리대	
	84A		다용도실 벽면 / 천정	면 탄성코트 마감	800,000		
	84B	]	다용도실 벽면 / 천정	t면 탄성코트 마감	770,000		
	84C		다용도실 벽면 / 천정	t면 탄성코트 마감	720,000		
다용도실	84D	다용	다용도실 벽면 / 천정	t면 탄성코트 마감	880,000	다용도실 벽 및 천장면 기본제공 수성페인트 대	가감고
탄성코트 마감	99A	도실	다용도실 벽면 / 천정	t면 탄성코트 마감	730,000	차인액 반영	
	99B		다용도실 벽면 / 천정		760,000		
	119A/B	]	다용도실 벽면 / 천정		770,000		
	119C/D		다용도실 벽면 / 천정	t면 탄성코트 마감	800,000		

- ▶ 전 주택형 주방벽 및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옵션은 2가지 제품중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확장기본형 세대와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세대로 구분되어 있으니, 추가선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 주택형 주방벽 및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은 기본 설치되는 주방벽 락패널 마감과 주방가구 상판 인조대리석(MMA) 마감과의 차인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세대의 경우 옵션 선택시 아일랜드장에 기본 설치되는 인조대리석(MMA) 상판 마감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전 주택형 주방벽 및 주방가구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 선택 시 자재의 특성상 분절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고 이음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 시 색상 및 무늬가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방 마감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과 주방벽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과는 본 공사시 자재 발주시기 차이로 인해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전 주택형 옵션 선택 시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손빨래 하부장은 마감재 옵션선택이 불가능하며, 인조대리석 상판(MMA)으로만 마감됩니다.
- ▶ 거실 및 해당타입(99A, 119A/B제외) 주방 아트월에 세라믹 패널 또는 에디톤 패널 마감 중 옵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 시 해당 부위 기본 제공 디자인월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 거실 창호주변 및 거실 뒤쪽 벽면에 디자인 패널 마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걸레받이 설치)로 시공됩니다.
- ▶ 거실 및 해당타입(99A, 119A/B제외) 주방 아트월 세라믹 패널 또는 에디톤 패널 마감 및 벽 디자인 패널 마감, 세대 공용부 마감 특화 옵션 선택 시 마감두께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세대(디자인월 및 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 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거실 및 해당타입(99A, 119A/B제외) 주방 아트월 아트월 옵션인 세라믹 패널 또는 에디톤 패널 마감은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거실 창호주변 및 뒷벽면 옵션인 디자인 패널 마감은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거실+주방 아트월 세라믹 패널 또는 에디톤 패널 마감' 및 '거실벽 디자인패널 마감',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당'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설치 범위가 중복되어 '세대 공용부 마감 특화' 옵션과 동시 옵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 '세대 공용부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과 '세대 공용부 마감 특화' 옵션 선택 시 해당 부위 천장에 설치되는 픽쳐레일 일체형 몰딩은 도장으로 마감되며, 자재 특성상 일반 몰딩(랩핑마감)과 이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세대 공용부 마감 특화 옵션 선택 시 세대 공용부위에 면한 목창호(침실1,2,3/욕실1)가 히든도어(침실1 PET마감/침실2,3,욕실1 디자인패널 마감)로 설치되며, 히든도어 상세 및 디자인, 하드웨어(핸들, 정첩 등)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히든 도어에 별도의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공용부 마감 특화 옵션 선택 시 다용도실 도어(84A타입은 실외기실 도어 포함)는 도어(PL터닝도어) 특성상 히든도어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세대 공용부 마감 특화 옵션 선택 시 욕실1에 히든도어 설치로 인해 욕실 도어씰(인조석)의 재질, 규격 및 형태(물코 삭제 및 너비 확대 등), 색상이 변경되며, 해당 도어씰과 마루판 사이에 금속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 세대 공용부 마감 특화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세라믹 패널 및 디자인 패널 마감은 본 공사시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 마감 또는 세대 공용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및 침실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 마감옵션은 전체 실 일괄 선택만 가능하며, 옵션 미선택 시 기본 광폭 하이브리드 강마루(폭115mm)로 시공됩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는 색상 및 무늬가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공용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및 침실 광폭 동조 플렉스 강마루 마감옵션 선택시 두 마루판 연결부위(실별 목창호 하단)에 금속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 바닥 마감 옵션 선택시 마루판(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 및 공용부 플렉스 스퀘어 강마루) 설치범위는 실별 붙박이 가구 옵션 선택(주방 아일랜드장/냉장고장, 침실 붙박이장 등)에 따라 설치범위가 달라집니다.
- ▶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세라믹패널, 에디톤 패널, 디자인 패널, 엔지니어드스톤 등)에 의한 나누기, 상세도 변경으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등)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 세대 주방에는 가스 공급을 위한 설비가 되어 있으며, 주방 상판(인조대리석 또는 엔지니어드 스톤(옵션))에는 가스렌지 옵션과 상관없이 가스 연결구가 타공됩니다.
- ▶ 세대 공용부 마감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스위치는 기본제공 도어기준(목창호 설치)으로 설치되며, 히든도어 마감에 따른 스위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m²)	제조사		설치유형	판매가	비고	
		ALT-1	1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 키큰장(W=600)	1,560,000		
		삼성전자	ALT-2	냉장고장 +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C7(9/8)95AP)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0AP) + 1도어 키친핏 김치 (RQ34C7(9/8)45AP)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7,45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냉장고장/	84A	(비스포크)	ALT-3	냉장고장 +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C7(9/8)95AP)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0AP) + 1도어 키친핏 김치 (RQ34C7(9/8)45AP) + 팬트리장(W=1200)	8,4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팬트리장 옵션 추가 선택시 삭제되는 해당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택 1
빌트인 냉장고		LG전자	ALT-4	냉장고장 +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8,45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오브제)	ALT-5	냉장고장 +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팬트리장(W=1200)	9,4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팬트리장 옵션 추가 선택시 삭제되는 해당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ALT-1	1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 가구패널 마감	1,170,000		
	84B	삼성전자 (비스포크)	ALT-2	냉장고장 +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C7(9/8)95AP)	7,2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택1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0AP)						
				+ 1도어 기천첫 천본 (R224C3(9/8)d0AP) + 1도어 키친핏 김치 (RQ34C7(9/8)45AP)						
				+ 키큰서랍장(W=350) + 가구패널 마감 냉장고장						
		LG전자		- ㅎㅎ^ㅎ +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ALT-3		8,200,000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오브제)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ALT	1	+ 키큰서랍장(W=350) + 가구패널 마감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070,000					
		ALT-	<u> </u>	발장고장	970,000					
				- 8828   +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C7(9/8)95AP)						
		삼성전자	ALT 2		7,0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비스포크)	ALT-2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0AP)	7,000,000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84C			+ 1도어 키친핏 김치 (RQ34C7(9/8)45AP)			택1			
				+ 키큰서랍장(W=350) 냉장고장						
		LC저다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LG전자	ALT-3	+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8,000,000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오브제)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A1.T	1	+ 키큰서랍장(W=350)	1 170 000					
		ALT-	I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 가구패널 마감 냉장고장	1,170,000					
	84D	삼성전자		+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C7(9/8)95AP)	7,0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비스포크)	ALT-2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0AP)	7,200,000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 1도어 키친핏 김치 (RQ34C7(9/8)45AP)		·	택1			
				+ 키큰서랍장(W=350) + 가구패널 마감						
		LG전자 (오브제)		냉장고장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ALT-3	+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8,200,000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오브제)	(오브제)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1	+ 키큰서랍장(W=350) + 가구패널 마감	4.070.000					
		ALT-	1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 가구패널 마감 냉장고장	1,070,000					
		삼성전자		+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C7(9/8)95AP)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비스포크)	ALT-2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0AP)	7,100,000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99A			+ 1도어 키친핏 김치 (RQ34C7(9/8)45AP)			택1			
				+ 키큰서랍장(W=300) + 가구패널 마감			''			
				냉장고장						
		LG전자	ALT-3	+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8,1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오브제)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3,113,130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 키큰서랍장(W=300) + 가구패널 마감						
		ALT-	1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1,000,000					
	998			냉장고장						
		삼성전자 (비스포크) 99B		+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C7(9/8)95AP)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ALT-2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OAP)   7,000,0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0AP)	7,000,000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기간적 변경 	택1				
				+ 키큰서랍장(W=400)						
		LCHT		냉장고장		OHU 내자그 오셔 ᄎ가 서태 브				
		LG전자	ALT-3	+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8,000,0	8,000,000					
		(오브제)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 키큰서랍장(W=400)					
		ALT-	1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 가구패널 마감	1,100,000				
	119A/B		ALT-2	냉장고장 +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C7(9/8)95AP)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0AP) + 1도어 키친핏 김치 (RQ34C7(9/8)45AP)	7,1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 택1		
		LG전자 (오브제)	ALT-3	+ 키큰서랍장(W=400) + 가구패널 마감       냉장고장       +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키큰서랍장(W=400) + 가구패널 마감	8,1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ALT-	1	일반 냉장고 수납장 +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 키큰장(W=800) + 키큰장(W=400) + 가구패널 마감	1,670,000				
	119C/D			ALT-2	냉장고장 +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C7(9/8)95AP)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0AP) + 1도어 키친핏 김치 (RQ34C7(9/8)45AP) + 키큰장(W=550) + 키큰장(W=550) + 키큰장(W=400) + 가구패널 마감	7,9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비스포크)	ALT-3	냉장고장 + 1도어 키친핏 냉장 (RR40C7(9/8)95AP) + 1도어 키친핏 변온 (RZ24C5(9/8)G0AP) + 1도어 키친핏 김치 (RQ34C7(9/8)45AP) + 팬트리장(W=1100) + 키큰장(W=400) + 가구패널 마감	8,5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옵선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팬트리장 옵션 추가 선택시 삭제되는 해당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택1		
		LG전자 (오브제)	ALT-4	냉장고장 +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키큰장(W=550) + 키큰장(W=550) + 키큰장(W=400) + 가구패널 마감	8,9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오브제)	ALT-5	냉장고장 + 오브제 4도어 냉장고 (BC4S1AA1) + 오브제 1도어 2단서랍 김치냉장고 (BC3K1AA1) + 팬트리장(W=1100) + 키큰장(W=400) + 가구패널 마감	9,500,000	-오브제 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 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팬트리장 옵션 추가 선택시 삭제되는 해당 부분과의 차인액 반영
				확장 기본형 주방가구에 선택 가능		10 12 11 12 120			
		LG전자	ALT-1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BEY3GBI)	900,000	- 차감 : 기본제공 SK매직 3구 가스쿡탑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전 주택형	SK매직 LG전자 LG전자	ALT-2 ALT-3 ALT-4	인덕션 2구 + 가스 1구 (GRA-BI322H) 인덕션 3구 (BEI3GQBI) 인덕션 3구 (BEI3WWQLBI)	850,000 1,200,000 1,400,000	- 추가 : 가스차단장치 추가 설치비용 반영 (GRA-BI322H 제품은	택 1		
		SK매직	ALT-5	보더리스 인덕션 (IHR-BQ40E)	1,950,000	가스차단장치 제외)			
빌트인	전 주택형	LG전자	ALT-1	식기세척기 12인용 (DIB22S)	1,200,000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확장기본 제공 수납공간(여닫이 도어)과의 차인액 및 콘센트 추가비용	택 1		
식기세척기		SK매직	ALT-2	식기세척기 14인용 (DWA-90R5B)	1,350,000	사진액 및 콘센트 무기미용   반영			
빌트인 와인셀러	전 주택형	LG전자	디오스 9	라인셀러 (R-WZ46JKX)	1,150,000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확장기본 제공 수납공간(여닫이 도어)과의 차인액 및 콘센트 추가비용 반영			
주방 스마트TV	전 주택형	새로닉스		인식 스마트 주방TV (STV-1331AI)	550,000	옵션 선택시 기본설치 주방TV의 차인액 반영			
빌트인 정수기	전 주택형	LG전자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WU903AS)	1,200,000	콘센트 추가비용 반영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후 선택가능					

		인조대리석(1	MMA) 상판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수납장 + 측면수납장			
	84A		,	용 매입형 콘센트	1,650,000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양념서랍장 + 수납장 + 측면수납장			
	84B		•	용 매입형 콘센트	2,060,000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수납장 + 배면수납장			
	84C	1		용 매입형 콘센트	1,570,000		
		· · ·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양념서랍장 + 수납장 + 측면수납장			
	84D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	용 매입형 콘센트	2,060,000		
아일랜드장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수납장 + 측면수납장			
	99A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	용 매입형 콘센트	1,760,000		
	000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수납장 + 배면수납장			•
	99B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	용 매입형 콘센트	1,580,000		
	1101 10	인조대리석(1	MMA) 상판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수납장 + 측면수납장			
	119A/B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	용 매입형 콘센트	1,770,000		
	1106/5	인조대리석(1	MMA) 상판	마감 + 전자레인지장 + 밥솥장 + 수납장 + 측면수납장			
	119C/D	+ 스마트폰	무선충전겸	용 매입형 콘센트	1,850,000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아일랜드장	2,150,000		
	84A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아일랜드장	2,100,000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아일랜드장	2,640,000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아일랜드장	2,560,000		
	84B			, , , , , , , , , , , , , , , , , , , ,			
	0.5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아일랜드장	2,510,000		
		SK매직 LG전자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아일랜드장	3,050,000		주택형별 택 1
	84C	삼성전자	ALT-1 ALT-2	광파오븐 (MZ385EBTA) + 아일랜드장 전기오븐 (NQ36A6588CW) + 아일랜드장	2,070,000		
		SK매직	ALT-2	스팀오븐 (EON-B440SA) + 아일랜드장	2,020,000 2,560,000		
		LG전자	ALT-3		2,560,000		
아일랜드장	84D	삼성전자	ALT-1	전기오븐 (NQ36A6588CW) + 아일랜드장	2,510,000		
+	040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아일랜드장	3,050,000	전기오븐 옵션 추가 선택시 삭제	
빌트인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아일랜드장	2,260,000	되는 아일랜드장(옵션)내 전자레	
	99A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아일랜드장	2,210,000	- 인지장과의 차인액 반영	
전기오븐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아일랜드장	2,750,000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아일랜드장	2,080,000		
	99B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아일랜드장	2,030,000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아일랜드장	2,570,000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아일랜드장	2,270,000		
	119A/B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아일랜드장	2,220,000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아일랜드장	2,760,000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아일랜드장	2,350,000		
	119C/D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아일랜드장	2,300,000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아일랜드장	2,840,000		
	84A			[ (PRR-B068EN) + 아일랜드장	2,200,000		
	84B			L (PRR-B068EN) + 아일랜드장	2,610,000	1	
아일랜드장	84C			L (PRR-B068EN) + 아일랜드장	2,120,000	· ] 쌀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시 삭제	
+	84D		쌀냉장고	l (PRR-B068EN) + 아일랜드장	2,610,000	되는 아일랜드장(옵션)내 수납공	
빌트인	99A	파세코	쌀냉장고	! (PRR-B068EN) + 아일랜드장	2,310,000	건(여닫이 도어)과의 차인액 및	
	99B		쌀냉장고	! (PRR-B068EN) + 아일랜드장	2,130,000	· 콘센트 추가비용 반영	
쌀냉장고	119A/B		쌀냉장고	L (PRR-B068EN) + 아일랜드장	2,320,000		
	119C/D		쌀냉장고	! (PRR-B068EN) + 아일랜드장	2,400,000		
	<u> </u>				<u> </u>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2,700,000	
	84A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2,650,000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3,190,000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3,110,000	
	84B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3,060,000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3,600,000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2,620,000	
	84C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2,570,000	
아일랜드장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3,110,000	TING H O H + 71
+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3,110,000	-전기오븐 옵션 추가 선택시 - 사페디노 아이랜드자(오셔) 비
빌트인	84D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3,060,000	† 삭제되는 아일랜드장(옵션)내 - 전자 레인지장과의 차인액 반영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3,600,000	
전기오븐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2,810,000	-쌀냉장고 옵션 추가 선택시
+	99A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2,760,000	삭제되는 아일랜드장(옵션)내
빌트인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3,300,000	수납공간(여닫이 도어)과의
 쌀냉장고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2,630,000	] 차인액 및 콘센트 추가비용 반영   
三〇〇工	99B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2,580,000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3,120,000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2,820,000	
	119A/B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2,770,000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3,310,000	
		LG전자	ALT-1	광파오븐 (MZ385EBT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2,900,000	
	119C/D	삼성전자	ALT-2	전기오븐 (NQ36A6588CW)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2,850,000	
L		SK매직	ALT-3	스팀오븐 (EON-B440SA) + 쌀냉장고 (PRR-B068EN) + 아일랜드장	3,390,000	

- ▶ 주택형별 냉장고장 옵션 선택시 냉장고장 설치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후면 및 측면, 천장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해당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 냉장고장(옵션)의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간은 고객님이 소유하신 제품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냉장고장 옵션 선택시 설치 품목은 설치공간 및 설치위치의 차이로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 ▶ 냉장고장 옵션 미선택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 비스포크 냉장고 및 오브제 냉장고는 냉장고장 옵션 선택후 추가 선택 가능한 품목임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비스포크 냉장고, 오브제 냉장고 선택시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위는 비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품목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 각 주택형별 비스포크 냉장고, 오브제 냉장고 선택시 타입별로 키큰서랍장 또는 키큰장이 동시에 설치(84A형 제외)되며, 해당품목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또는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84A형 빌트인 냉장고 옵션 선택시 팬트리장 또는 일반 김치냉장고 수납장 선택가능)
- ▶ 84A, 119C/D타입은 비스포크 냉장고, 오브제 냉장고 옵션 선택시 주방 팬트리장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으며, 팬트리장 설치로 인해 냉장고장(옵션)에서 삭제되는 부분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삼성 비스포크 및 LG 오브제 가전은 B2B 전용 모델이며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고,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 비스포크 냉장고/오브제 냉장고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시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단,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GRA-B1322H 제품만 가스1구 쿡탑 설치로 인해 가스가 연결됩니다.
-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기본 설치 3구 가스쿡탑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아울러 주방 상판(인조대리석 또는 엔지니어드 스톤(옵션))에는 옵션과 상관없이 가스 연결구가 타공됩니다.
-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시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설치)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가구패널로 마감되며, 해당 판매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 ▶ 빌트인 와인셀러는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수납공간(여닫이 도어설치)과의 차인액 및 콘센트 추가비용을 해당 판매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 ▶ 주방 스마트TV는 옵션 선택 시 설치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방 스마트TV 옵션 선택 시 국선(집 전화) 일반 통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주방 스마트TV 옵션 선택 시 음성인식 기능 외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입주 후 개별적으로 인터넷 가입 후 사용이 가능하며, 주방TV 설치로 인해 창호 개폐, 가전제품/주방용품 배치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스마트 주방TV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10" 주방TV는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비확장형 기본제공)
- ▶ 빌트인 정수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주택형별로 변경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옵션 선택시 씽크볼 하부장에 정수기 본체가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수납공간 사용 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빌트인 정수기 옵션 선택 시 주방창호 핸들과 사용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빌트인 정수기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전용회로와 관련된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인조대리석(MMA) 상판으로 마감되며, 가구내 배선기구의 설치로 인해 아일랜드장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설치 품목은 설치공간 및 설치위치의 차이로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84B.84D타입의 경우 양념서랍장이 설치공간의 제약으로 확장기본형 주방가구가 아닌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에 설치됩니다.
-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아일랜드장 설치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측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경용 매입형 콘센트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아일랜드장 옵션 판매가격은 전자레인지, 밥솥,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의 전원공급 관련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내 옵션 선택에 따라 전원 공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겸용 매입형 콘센트 및 가전 추가옵션인 전기오븐, 쌀냉장고 선택시 아일랜드장내 배선이 노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 ▶ 99A, 119A/B, 119C/D 타입은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독립형 아일랜드장이 아닌 확장기본형 주방가구(¬자 배치)에 연결되어 설치(ㄷ자 배치로 변경)되며, 해당 부분 수납레이아웃 및 수납공간 구성 위치가 변경됩니다. 아울러 확장기본형 주방가구에서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차인액을 해당타입 아일랜드장 판매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 ▶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빌트인 전기오븐 및 쌀냉장고는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후 추가선택 가능한 품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빌트인 전기오븐 옵션 선택시 판매가격은 전용회로와 관련된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빌트인 전기오븐은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후 추가 선택 가능하며, 추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아일랜드장내 전자레인지 수납장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빌트인 쌀냉장고는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후 추가 선택 가능하며, 추가 옵션 선택시 삭제되는 아일랜드장내 수납공간(여닫이 도어)과의 차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빌트인 쌀냉장고 옵션 선택시 가구내부에 쌀냉장고용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향상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조 명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m²)	설치위치	설치유형	판매가	비고	
	84A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95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84B	1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95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84C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5,80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거실 우물천장 조명	84D	거실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5,20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기리 구발한이 보이	99A	712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5,65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99B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6,75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119A/B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5,78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119C/D	7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5,550,000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과의 차인액 반영	
	84A	84B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 씰링팬 5,570,000	5 570 000	- 차감 :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	주택
				- 추가 : 씰링팬 천장보강 비용	- 형별	
	84B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 씰링팬	5,570,000	- 차감 :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	
	046		7/2 +200 1000 + 00 /1-112 + 10/10/11-0 + 200		- 추가 : 씰링팬 천장보강 비용	택1
	84C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 씰링팬	6,420,000	- 차감 :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	
거실 우물천장 조명	040	거실	7	0,420,000	- 추가 : 씰링팬 천장보강 비용	
+씰링팬	84D	기열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 씰링팬	5,820,000	- 차감 :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	
	040		7	3,020,000	- 추가 : 씰링팬 천장보강 비용	
	99A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 씰링팬	6,270,000	- 차감 :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	
	33/1		기근 구글건경 역단법증 + 건경 시트웨근 + 덕경세역시트램 + 걸링텐	0,270,000	- 추가 : 씰링팬 천장보강 비용	
	000	000	기사 오르쳐자 지기자로 . 취자 나트레너 . 디미케이지스테 쓰리펜	7 270 000	- 차감 :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	
	99B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 씰링팬	7,370,000	- 추가 : 씰링팬 천장보강 비용	

	110 A /D		기사 오무치자 지기적도 취자 나르펜네 - 디미케이니스테 - 씨리펜	6 400 000	- 차감 :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			
	119A/B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 씰링팬	6,400,000	- 추가 : 씰링팬 천장보강 비용			
	119C/D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 씰링팬	6 170 000	- 차감 : 기본제공 거실 직부등 및 우물천장 도배마감			
	119C/D		기술 구출전형 역산업량 + 전형 시트페셜 + 다형제에시드램 + 설형펜 	6,170,000	- 추가 : 씰링팬 천장보강 비용			
	99A		주방 우물천장 +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400,000	기본제공 천장 도배마감 및 다운라이트와의 차인액 반영			
주방 우물천장	119A/B	주방	주방 우물천장 +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5,100,000	기본제공 천장 도배마감 및 다운라이트와의 차인액 반영			
	119C/D		주방 우물천장 + 직간접등 + 천장 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5,100,000	기본제공 천장 도배마감 및 다운라이트와의 차인액 반영			
	84A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	1,750,000	기본제공 침실등/스위치/온도조절기와의 차인액 반영			
	84B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	1,750,000	기본제공 침실등/스위치/온도조절기와의 차인액 반영			
	84C		침실1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 분리형	1,400,000	기본제공 침실등/스위치/온도조절기와의 차인액 반영	평 면 선 택 형 에		
	840	040	침실1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	1,350,000	기본제공 침실등/스위치/온도조절기와의 차인액 반영	따른 택1		
침실 색온도디밍	84D	침실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	1,750,000	기본제공 침실등/스위치/온도조절기와의 차인액 반영			
시스템	99A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알파공간)	2,200,000	기본제공 침실등/스위치/온도조절기와의 차인액 반영			
	99B		침실1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분리형 (침실1+침실2+침실3+알파공간)	2,200,000	기본제공 침실등/스위치/온도조절기와의 차인액 반영	평 면 선 택 형 에		
		998	99B	침실1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	2,150,000	기본제공 침실등/스위치/온도조절기와의 차인액 반영	따른 택1	
	119A/B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알파공간)	2,200,000	기본제공 침실등/스위치/온도조절기와의 차인액 반영			
	119C/D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알파공간)	2,200,000	기본제공 침실등/스위치/온도조절기와의 차인액 반영			
	84A		주방가구 상부장 LED 지판조명	550,000	전기배선 및 스위치 설치비용 포함			
	84B		주방가구 상부장 LED 지판조명	500,000	전기배선 및 스위치 설치비용 포함			
	84C		주방가구 상부장 LED 지판조명	600,000	전기배선 및 스위치 설치비용 포함 전기배선 및 스위치 설치비용 포함			
즈바기그 사비자 도면	84D	<sup>-</sup> - 주방	주방가구 상부장 LED 지판조명	520,000				
주방가구 상부장 조명	99A	7 78	주방가구 상부장 LED 지판조명	600,000	전기배선 및 스위치 설치비용 포함			
	99B	1	주방가구 상부장 LED 지판조명	700,000	전기배선 및 스위치 설치비용 포함			
	119A/B	1	주방가구 상부장 LED 지판조명	600,000	전기배선 및 스위치 설치비용 포함			
	119C/D	1	주방가구 상부장 LED 지판조명	560,000	전기배선 및 스위치 설치비용 포함			

- ▶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 주방 우물천장 선택 시 우물천장이 시트 패널로 마감되며, 거실 우물 천장내 직부등 / 주방 천장 다운라이트가 삭제되고 직간접 조명으로 설치됩니다. 설치되는 우물천장 직간접 조명은 상부 간접조명, 하부 직부형 조명으로 구성되며, 하부 직부형 조명은 디밍제어가 가능(색온도 조절은 불가) 합니다.
- ▶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선택세대는 우물천장 시트 패널 마감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와 우물천장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 ▶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 주방 우물천장 옵션 선택 시 스위치 형태 및 작동 방식이 변경됩니다.
- ▶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 주방 우물천장 옵션 선택 시 입주 후 고객이 직부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아울러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미선택 세대는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거실 씰링팬은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선택 후 추가 옵션 선택이 가능하며, 조명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예비 스위치와 연동되어 작동(ON/OFF)합니다. (기타 작동은 씰링팬 리모컨 사용)
- ▶ 거실 씰링팬은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거실 우물천장 조명 옵션 / 주방 우물천장 옵션 선택 시 전원공급용 배전반이 추가로 설치되며(현관 팬트리내 설치), 설치위치에 따라 해당 부분 수납 레이아웃(현관 팬트리의 경우 시스템 선반구성)이 변경되거나, 수 납 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방 우물천장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기존 다운라이트 및 스위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설치세대 천장 시트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직간접 조명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거실 우물천장 / 주방 우물천장(옵션) 몰딩 디자인 및 규격(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99A. 119A/B. 119C/D 타입은 주방 우물천장 옵션 선택이 가능하며, 옵션 미선택시 도배 마감되고 다운라이트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주방 등기구 스위치 형태 및 작동방식이 변경됩니다.

- ▶ 99B타입은 탑상형 평면 특성상 주방 우물천장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 침실 색온도 디밍시스템은 특화조명(주조명 밝기와 색온도 제어 및 테두리 간접조명)과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로 구성된 시스템이며, 추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거실에 설치되는 디밍시스템은 색온도 조절기능이 없습니다.)
- ▶ 침실 색온도 디밍시스템은 공사 특성상 전체 침실 일괄 선택(해당타입 알파공간 포함)만 가능(침실별 개별 선택 불가)합니다.
- ▶ 침실 색온도 디밍시스템 옵션 선택 시 난방 온도조절기가 통합된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가 설치되며, 디스플레이의 화면 구성 및 조작방식은 기능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침실 색온도 디밍시스템 옵션 선택 시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는 해당실의 조명과 난방을 음성으로 ON/OFF가 가능하며 별도의 제어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침실 색온도 디밍시스템 판매가격은 기존 침실의 직부등 및 스위치 온도조절기 삭제 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주방가구 상부장 조명 옵션 선택 시 상부장에 별도 스위치(ON/OFF)가 설치되며, 조명용 배전반 설치로 인해 해당 부분 주방 상부장의 수납 레이아웃이 변경되거나 수납 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방가구 상부장 조명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조명 및 스위치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방가구 상부장 조명 옵션 선택시 가구지판에 조명설치로 인해 양개도어 상부장 세로보강목이 삭제됩니다. 아울러 선반처짐 방지를 위해 양개도어 상부장의 경우 선반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욕실 상품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m²)	설치위치	설치유형	판매가	비고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 주택형	욕실1	비데일체형 양변기	400,000	기본제공 투피스형 양변기와의 차인액 반영	
미대글제당 6단기	전 주택형 욕실2		비데일체형 양변기 400,000		기본제공 투피스형 양변기와의 차인액 반영	
욕실 조명특화	전 주택형	욕실1+욕실2	욕실장 간접조명 + 센서미등	530,000	기본제공 욕실 다운라이트(1개소)와의 차인액 반영	
욕실 복합 화풍기	전 주택형	욕실1+욕실2	욕실 천장 복합환풍기 설치	920,000	기본제공 욕실 환기디퓨저 및 배기팬과의 차인액 반영 및	
국고 국립 선정기	인 구택명 	¬21+¬22	국고 언어 국립원당기 교시 	920,000	천장재 보강비용 포함	

- ▶ 비데 일체형 양변기는 욕실1. 욕실2 개별 옵션선택이 가능합니다.
- ▶ 욕실 조명특화, 복합환풍기 옵션은 욕실1 및 욕실2 동시 설치 옵션선택만 가능하며, 욕실별 개별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 비데 일체형 양변기 및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비데 일체형 양변기 옵션 미선택 시 투피스형 양변기가 설치되며, 차인액을 판매가에 반영하였습니다.
- ▶ 비데 일체형 양변기 컨트롤러는 옵션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컨트롤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센서 기능이 포함된 다운라이트가 욕실별로 1개소 설치되며, 센서 기능은 스위치 OFF시에만 심야 유도용 미등이 점등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욕실장 간접조명은 스위치를 통해서 제어하며 센서 기능은 없습니다.
- ▶ 욕실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기존 욕실의 다운라이트와 관련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복합 화풍기 옵션 미선택 시 욕실 안쪽에 배기 디퓨져 및 욕실 천정내부에 배기훼이 설치되며, 디퓨져 위치는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디퓨져와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판매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복합 화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복합 환풍기의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리모컨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복합 화풍기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전용회로와 관련된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스위치와 연동되어 작동(ON/OFF)합니다. (기타 작동은 복합 환풍기 리모컨 사용)

#### 8. 창호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m²)	설치위치 및 구성품		판매가	비고
	84A		단열필름 시공(내창 유리1면)	2,150,000	확장기본형 단위세대 전체 외부창호 내창 유리1면 시공
	84B		단열필름 시공(내창 유리1면)	2,100,000	확장기본형 단위세대 전체 외부창호 내창 유리1면 시공
	84C	외부	단열필름 시공(내창 유리1면)	2,150,000	확장기본형 단위세대 전체 외부창호 내창 유리1면 시공
외부창호 단열필름	84D		단열필름 시공(내창 유리1면)	2,150,000	확장기본형 단위세대 전체 외부창호 내창 유리1면 시공
	99A	창호	단열필름 시공(내창 유리1면)	2,600,000	확장기본형 단위세대 전체 외부창호 내창 유리1면 시공
	99B		단열필름 시공(내창 유리1면)	2,550,000	확장기본형 단위세대 전체 외부창호 내창 유리1면 시공
	119A/B		단열필름 시공(내창 유리1면)	2,750,000	확장기본형 단위세대 전체 외부창호 내창 유리1면 시공

119C/D	단열필름 시공(내창 유리1면)	2,700,000	확장기본형 단위세대 전체 외부창호 내창 유리1면 시공

- ▶ 외부창호 단열필름 마감은 타입별 확장형 외부창호(이중창) 전체 실내측 내창 유리1면에 시공됩니다.
- ▶ 외부창호 단열필름 마감은 시공부위 유리크기가 필름 장폭보다 클 경우 이어붙임으로 시공됩니다.
- ▶ 외부창호 단열필름은 야간에 실내 점등시 무지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외부창호 단열필름은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조사, 사양, 색상 등)될 수 있습니다.

#### ◎ 유상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통합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급(10%), 중도급(10%), 잔금(8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국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우리자산신탁㈜	

#### ◎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품목의 제약상 발코니 확장형 계약 세대만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분양대금 관리모계좌 [국민은행 393301-04-103220,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해당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계약서상의 동호수에만 부여된 고유계좌번호(세대별 가상계좌)로 송금메모(기재사항)에 관계없이 이 계약서상의 계약자가 입금(납부)한 것으로 간주함(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 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단종 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시스템에어컨은 3년, 빌트인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 쿡탑, 의류관리기) 2년, 붙박이 가구는 2년, 엔지니어드 스톤 등 은 2년간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제외)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전 주택전시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계획되었으며, 설치 공간 및 기본 설치품목은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 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개별 유의사항은 품목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확장 기본형)대로 시공됩니다.
- 준공이후 현관중문을 개별적으로 설치시 현관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감지기 미설치로 인해 현관 내 화재 감지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 1)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창호, 바닥재, 벽, 천장, 조명기구, 욕실기구, 주방가구 등)에서 계약자가 직접 일괄 신청시 해 당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선택은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배정 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기본선택품목 세대 동·호수 우선 배정하지 않음)

####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1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입니다.

구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문	목재문(문틀, 포켓도어포함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PL창호(터닝도어 포함) 등	목재문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제외),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실외기 그릴창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팬트리)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재료분리대, 실외기실 바닥타일 등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슬리브(바닥배수 드레인 및 마감커버 제외), 우수선홈통
	벽	벽지, 장식벽(벽지, 시트지 및 벽패널류, 디자인월 등), 발코니 및 실외기실, 현관 팬트리의 벽체도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경량벽체, 스위치, 콘센트, 벽부형 조명기구 등	콘크리트 벽체 위 초배지 마감 또는 기타 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전기배관/배선
일괄선택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도장	천장면 석고보드, 커텐박스, 발코니 천장면처리
일괄선택 (개별선택불가)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 욕실매입등	전기배관/배선
	욕실	천장재(천장틀 포함), 타일(바닥), 락패널(벽), 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수전,샤워기 등), 샤워부스, 욕실악세서리,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 욕실환풍기, 환기 디퓨져, 스위치 및 콘센트, 수전박스 마감 등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바닥배수 슬리브), 전기배관/배선, 배기덕트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 락패널, 설비수전류, 싱크볼, 렌지후드, 가스쿡탑, 자동식소화시스템, 스위치 및 콘센트 등	소방검사 관련 후드,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전기·통신배관/배선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현관신발장, 현관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선반), 다용도살실외기실) 및 발코니(수전, 바닥배수 드레인 및 마감커버)	발코니 노출 배수입상배관, 하향식 피난구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구분 (주거전용면적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99A	99B	119A/B	119C/D
마이너스 옵션 금액	32,616,000	32,978,000	32,608,000	33,138,000	39,047,000	39,183,000	46,173,000	46,599,000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 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혐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조명설비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관련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각 세대내의 현관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관련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각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조명, 스위치, 콘센트 미설치로 인한 해당 설비의 스마트홈 기능은 구현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 금액이 적용된 분양금액(분양대금에서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 (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되므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주방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저층부(4층 이하)는 외부마감이 석재로 시공되므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 층수가 저층부인 경우, 발코니 창호 설치 시 석재를 정교하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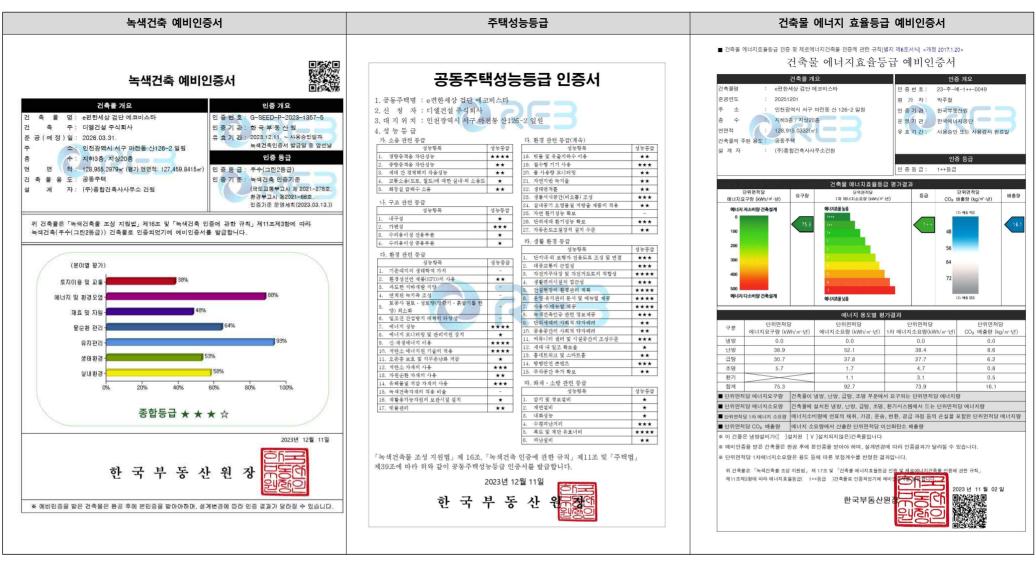
## ■ 기타 주요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제7조 제2항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제1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제2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제7조 제2항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미적용	에너지절약계획서상 삭제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구분	신청등급	내용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특등급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 홈네트워크건물인증

구분	신청등급	내용
홈네트워크건물인증	AA 등급	심사항목(1) + 심사항목(2) 중 16개 이상

구분	요 건
심사항목 (1)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단 블로킹 필터 미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스밸브제어기(전기차단장치)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현관방범감지기
	주동현관통제기
	원격검침전송장치
시니하다	차량통제기
심사항목 (2)	전자경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욕실폰
	주방TV
	일괄소등 제어
	디지털도어락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제어
	현관도어카메라

■ **내진 성능등급 표시**-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공개 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메르칼리 등급	VII − 0.197(g)

# ■ 결로방지 성능평가 결과

구분	평가 개소	평가결과
출 입 문	167#	적합
벽체접합부	1,370개	적합
창 호	837H	적합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 2)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7M	2.7M
지하2층	2.3M ~ 2.7M	2.7M

- ※ 지하2층 일부구간(7110동 후면 주차15면)은 지상의 비상차로 진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에 따라 차로높이는 2.3M
-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9

• 초등학교 : 인근학교 배치 가능(검단12초 **개교 미정**)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됩니다.

• 중학교 : 학교군 내 배치 가능

중·고등학교 학교군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 학교군 내 배치 가능하나, 과밀학급 우려(배치기준 급당 28명 적용시), 검단신도시 및 인근 도시개발사업 주택분양 등에 따른 학생 유입 상황에 맞춰 2027년 학교 신설시 해소 전망(가칭 검단3고 등)
-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게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사업지 인근의 공동주택 분양 일정 및 검단지역 중·고등학교 신설 여부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과의 협의에 학생배치 여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 ※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 지연 시 입주시기 조정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 신설학교 설립계획 변경 시, 당해지구 내 학교 부지가 취소 및 위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진행시 참고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 ※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설립여부는 변경 될 수 있음.
- ※ 신설학교 개교 시기를 재검토 예정으로 개교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질 경우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 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홍보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 단위세대 VR)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켓(CG) 및 VR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체결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전시관

- ·주택전시관은 84A, 119C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배치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입찰 결과)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고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본 공사시 입찰결과 및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가선택품목(설치사항, 규격),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시공부분, 단지모형,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CG, 세대VR 또는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홈페이지내 단위세대 VR(사이버 주택전시관)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은 이미지일 뿐이며, 본 전경 이미지는 평형별 동호라인의 조망향에 따라 준공 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VR에 표현되지 않은 각종 배선기구류(스위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등) 및 설비 배관류(가스배관, 계량기, 입상배관, 수전 등), 세대 분전함, 각종 점검구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 내 분전함, 통신단자함, 월패드의 설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본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액자 등 포함), 이동식 가구, 벽장식 패널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전시용 조명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의류관리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주택전시관 외부창호에 설치된 유리도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시 창호 유리는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침실 및 욕실 도어에 설치된 하드웨어(손잡이, 정첩, 도어스토퍼)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설비입니다.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환기구(급/배기용), 소방 감지기는 주택전시관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텐박스, PL창호, 주방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임)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 및 주택전시관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혹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CCTV, 소화기는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 ·주택전시관 내 등기구 조도량[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시 KS조도기준 동등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직부등 및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주택전시관 침실 POP에 명기된 실 치수는 발코니 확장 기본형 평면도의 안목치수 기준으로 추가 품목 선택시 가구 및 마감재 두께에 따라 내부치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삭하였으며, 실측 치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현관입구에 설치된 금속 프레임은 주택전시관 연출용 마감재입니다. 본 공사시 방화문틀 및 방화문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통사항

#### ■ 단지 내부여건

- ·계약 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사업계획(변경)승인 설계도서 및 시방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 주출입구 외의 단지 내 보행자통로(단지 내 연결통로 포함)의 디자인(선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ㆍ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설계변경 등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고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입니다.
-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야간 경관조명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후면출입구 설치동(7102동1,2라인 / 7103동3,4라인 / 7107동3,4라인 / 7108동1,2라인)의 저층세대는 조망과 프라이버시, 접근동선거리 등이 불리할 수 있으며, 필로티 출입 설치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보행자의 이동 및 진출입에 따른 소음과 프라이버시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후면출입구 설치동(7102동1,2라인 / 7103동3,4라인 / 7107동3,4라인 / 7108동1,2라인)의 저층세대는 조망과 접근동선거리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매연,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보관소, 주민공동시설, 산책로 등)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천장, 기계·전기실 등 각종 환기구가 설치 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지하2층에 연결이 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DA. 천창)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또는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녹지구간 내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 입니다.
- ・불박이 가구류[신발장, 불박이장(옵션), 화장대(옵션),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옵션),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1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지상 1~2층(필로티 포함)과 최상층에는 동체방범용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확장형 세대는 세대 내 창측에, 기본형 세대는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다만, 119A,B,C,D타입은 전층에 거실 또는 침실2에 동체감지기가 추가 설 치됩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환기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야간 경관조명,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 공사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가 있 을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중계장치는「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7102동, 7103동, 7105동, 7106동, 7108동, 7110동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7102동, 7103동, 7105동, 7106동, 7108동, 7110동)

#### 지하1층(7108동 PIT), 지하2층(7108동 휀룸, 7103동 휀룸, 7102동 제연휀룸)

- ·공동주택 공용홀 및 계단실의 설치되는 창은 주동의 형태와 조합에 따라 유무가 발생하며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고 채광·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ㆍ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하부 및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창고, 기계실(열료전지 및 지열, 열교환실 포함),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는 각동 주변에 배치되며, 일부 세대 내부에서 쓰레기분리보관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단지내·외부의 도로, 완충녹지, 공원 및 단지 내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 및 천창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이용범위가 상이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차장의 차로높이는 2.7M이고 택배차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2층의 일부구간(110동 후면 주차15면)은 지상의 비상차로 진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에 따라 차로높이는 2.3M이고 택배차량 진입은 불가 합니다. 지하주차장 주차면은 2.1M 이상 높이로 계획되어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차량 출입을 위해 램프 및 주차장 통로의 유효높이는 2.7m(일부구간 제외)으로 시공이 되나.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가스정압기실이 단지내부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인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혐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상가 주춬입구 레벨은 주변도로 레벨여건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계단 및 램프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유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ㆍ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주차장 입구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는 7101동 지하2층 주동 출입(#2 출입구) 주변에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비치용 도서 및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주동 외벽 마감 하부는(4층이하) 석재이며, 그 외 마감은 수성페인트 도료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주출입구는 필로티 또는 후면 진입이므로 각 동별 출입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 및 피로티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형태, 출입방식, 개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웉라리 또는 철재난간으로 시공되며,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지 모형 및 각종 CG홍보물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 또는 인접세대는 이동이나 단지 내 행위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ㆍ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

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는 부출입구에 배치될 예정임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문주와 인접한 주동의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및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일부 저층세대는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소방협의에 따라 안전매트 구간의 추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CCTV설치 위치는 단지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카 내부, 아파트 지하층:1층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홀, 1층 계단실, 옥상출입구에 설치됩니다.
- 단지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한 고정IP는 준공후 4개월간 무상제공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동 옥상층에 설치되며, 설치용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7101동과 7102동 사이 지하층에는 저수조 및 소화펌프실 7106~7110동 인근 지상층에는 아파트용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7102,7104동 지하에는 빗물저류조, 7107동 지하층에는 열교환기실과 지열기계실, 7109동 지하층에는 저수조실과 기계실, 7110동 지하층에는 아파트용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운전시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7101~7104, 7108~7110동 인근에는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실외기공간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및 주변구간에 대하여 관계기관(지차체, 경찰서 등) 혐의 결과에 따라 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주방 일부 발코니(다용도실),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 됩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직접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 야 합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류[신발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종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입찰 결과)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이 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콘크리트벽체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블록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주택전시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변경승인포함) 및 시행계획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 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충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충별 등 공급금액의 상이 합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 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단지 고저차로 인한 방음시설, 옹벽 등 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쿨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누수, 주변 세대 피해 등)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야간 경관조명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주택전시관으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문주,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VR)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대,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 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입찰결과에 따라 제조사, 규격 및 사양(유리 및 손잡이 포함),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ㆍ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ㆍ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면적, 지구단위계획 및 단지 외부(주변 도로레벨 및 경사도, 완충녹지 레벨 등) 조성공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변전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인천검단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및 계약체결장소,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부지 서측 역사공원 내 인천광역시 문화재(한백륜 묘)가 위치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주지 서측 근린공원 내에는 **수소연료전지**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ㆍ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1항3호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

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 하였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검사기준을 준수하며 충간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구조개선, 시공성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인·허가를 진행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분양 후 변경될 수 있기에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각동 출입구 게시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주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해야하며,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혐오시설, 각종 공사로 인한소음 등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검단신도시 동남측 김포공항이 위치하며,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소음의 경우 항공기 운항 패턴이 매우 불규칙하여 항공기 운항내용(종류, 운행횟수 등)에 따라 기준 소음도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 1. 일반사항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주택법」,「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세대VR,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합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또는 가전제품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지는 녹색건축(우수등급) 예비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예비인증을 득하였으며, 준공시 본인증을 득하는 과정에서 예비인증 등급확보를 위한 세부 배점 항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벽체면적 제외))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동 배치 특성에 따라 일부 동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시공됩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샤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 및 홍보물, 조감도와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놀이시설물을 포함한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 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 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사오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공사 진행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다르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단지내에 환기탑(D/A) 및 천창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102,7104동 지하에는 빗물저류조, 7107동 지하층에는 열교환기실과 지열기계실, 7109동 지하층에는 저수조실과 기계실, 7101동과 7102동 사이 지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 7110동 지하층에는 아파트용 전기 실,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운전시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연료전지기계실, 지열기계실, 열교환실, 빗물저류조 등의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반여건에 따른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의 지정 및 기초형식의 변경 또는 보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면 크기 및 철근배근 조정 등의 구조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2개의 변경사항은 구조기술사의 구조확인 및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 변경되는 사항이며, 향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관계법에 의거하여 입주자동의 절차를 감리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2. 단지배치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동배치 계획에 따른 일부세대 영구 음영이 존재 할 수 있으니, 해당여부를 계약전 반드시 모형 및 관련도서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 따라 단지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카페, 맘스스테이션, 에듀센터, 웰니스센터, 그린카폐,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대지 단차에 의해 데크층로 형성되었으며, 데크층 단차 이동을 위해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설치 인근동의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외부의 단차에 의해 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데크벽체 일부구간의 외벽에는 벽면녹화가 설치되며, 입주자의 임의에 따른 벽면녹화의 식재의 변경 및 이동, 철거를 할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설계변경 등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축 46m도로의 차량 소음저감대책으로 저소음포장을 반영하였으며, 준공전 도로교통소음 측정을 통해 소음저감 효과가 미흡할 경우 방음벽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세대는 조망 및 미관상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완충녹지와의 단차로 인해 옹벽 및 산벽등이 2단으로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해당 유관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 단차의 높이 또는 옹벽, 산벽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의 북동측(7104동 북측)코너 일부구간은 교통영향평가 반영사항으로 사업지내부 보도가 설치되며(약 93.5㎡) 완충녹지를 이용한 차로확장시 공공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설치구간에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진출입(주・부출입구) 교차로는 고원식교차로가 설치되며, 포장재질, 색상 및 기타사항은 본 공사시 해당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20m 도로(마전로)의 당 사업지측으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 됩니다.
- · 단지 서측도로에는 차량의 이동시 미끄럼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 됩니다.
- ㆍ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단지외 도로와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101동, 7109동, 7110동 인근 지하층 발전기실에서 전기안전공사 년1회 및 관리사무소의 비정기적 발전기 시운전으로 DA를 통한 매연발생 및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안등 및 CCTV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아파트 주동

- ・실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천창,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및 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환기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야간 경관조명,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7101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7102,7104,7107,7108,7110동 하부에는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고, 7104,7105동 인근에는 경로당이, 7109동 인근에는 맘스스테이션이 위치해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동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출입문과 에어커트,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102동 하부에는 에듀센터, 7104동 하부에는 웰니스센터, 7107동 하부에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7108동 하부에는 다함께돌봄센터,관리 및 용역원휴게실, 7110동하부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하며 이용자의 이동 및 시설이용시 장비등의 사용으로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를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ㆍ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변의 인근동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소음 및 진동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실외기의 설치에 따른 조망권 및 미관 등에 의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MRL 105m/min, 옥외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MRL 60m/min의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승강기 운행시 인접세대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의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공용전기 요금이 부과됩니다.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오픈발코니의 난간(재질, 색상 및 디자인), 옥상구조물의 형태, 크기, 높이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7104동, 7105동, 7106동에 설치되는 오픈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에 산입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확장을 할수 없으며, 빗물처리를 위한 우수입상관이 노출되어 설치 됩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석재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 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2층 이상(기준층)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주거동의 공용홀(승강기홀,계단실) 창호는 주동의 조합에 따라 설치의 유무, 개소, 크기 등이 상이하고 일부 주동의 공용홀은 직접채광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가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 제어반,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 및 웨더스테이션 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 ·전동(7101동 ~ 7111동) 옥상층에 태양광판넬이 설치될 계획이며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7101동 ~ 7109동의 1층 층고는 3.1m이며, 7110동, 7111동의 1층 층고는 5.1m로 건축물의 높이가(약 2.0m) 높게 시공 됩니다.
- ·지상1층 층고는 3.1m. 기준층 층고는 2.8m. 최상층 층고는 2.95m로 상이하나. 세대내에 설치되는 천장고는 2.3m로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 •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측벽 석재 디자인은 공사시 입주자 동의없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7103동 및 7104동에 한하여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 각동의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하부에는 제연훼룸이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송공동수신설비 안테나는 7108동,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는 7109동 옥상층에 설치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단위세대

-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유리 포함)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욕조,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입찰 결과)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 으로 시공됩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택형별 각 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환기디퓨져, 공기질센서(1개소 설치),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와 사양, 설치개소는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 월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실 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에 설치된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주택전시관용입니다. 발코니 확장시 외부창호는 이중창호[PL창]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입찰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유리종류, 하드웨어, 핸들, 창틀, 크기,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단, 비확장시 외부골조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은 그릴창으로 설치됩니다.
-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비확장 세대는 주방과 면한 발코니에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고, 방과 거실과 면한 발코니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는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세대분전반내 차단기 수량이 감소하며, 등기구의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천장구간 배관으로 마감면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옵션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경량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 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평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현장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텐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다르게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좌,우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식소화장치 설치공간 입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방상부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의류관리기 등) 및 가구가 용량/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환기장비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환기장비 설치등으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대 내측에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져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는 창호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 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하부가 필로티(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 포함)인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세대부전함, 통신단자함, 월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립세대에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위치, 콘센트, 주방TV, 욕실폰, 월패드류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침실의 콘센트 중 각 실별 1개소는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이 없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외기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디자인 패널, 락패널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바닥타일, 주방벽 락패널, 욕실벽 락패널, 거실 디자인 월, 복도 패널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재질 및 색상,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확장지급품목 포함) 및 일반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발코니의 바닥타일 패턴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

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인조대리석 선반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 세면기 하부장 등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ㆍ세대 내 에어컨 배관을 위해 거실에 스탠드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침실1(안방)에 벽부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실외기실에 실외기 연결을 위한 냉매박스가 설치되며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화재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세대, 하부1개 층 세대 는 개폐시 알림경보가 울리게 됨)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마감, 조명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옵션 및 평면 선택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패널 및 마감에 의한 줄눈나누기,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현관 팬트리 내부에 매입설치(커버 노출)되며, 아울러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전기분전함은 침실1(안방)벽에 매입설치(커버 노출)됩니다.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설치에 따라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고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관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설치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현관 인근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며,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본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추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다용도실 빨래건조대, 거실 벽걸이 TV등의 설치 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 다. 아울러 설치부위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벽체에는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등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보통 수직 형성)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을 지양해야 하며, 벽체 및 배관 파손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관계없이 확장형 세대는 전기분전반내 전기차단기는 설치되나 입주자가 개별 설치하는 품목에 대한 전기 배관, 배선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아일랜드장(추가선택품목)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 및 철거를 지양하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배관 및 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가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다용도실,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실외기실 등의 단차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엔지니어드스톤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아울러 이음면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ㆍ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디퓨져, 수전,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설치)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세대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의 위치는 본공사와는 무관하며,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됩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추가선택품목 포함)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창호(외부창호 및 목창호,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도어 등)의 제조사, 사양 및 손잡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의 제조사, 디자인, 시공디테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에 설치된 하드웨어(손잡이, 경첩, 스토퍼, 손끼임 방지장치 등)는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색상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분전함, 월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거실 및 침실등에 설치되는 커텐박스의 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벽부형 조명기구, 스위치, 환기제어기, 환기장비의 설치위치는 하향식 피난구 열림(개폐) 방향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 후면은 별도의 락패널 마감이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욕조 하부에는 마감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비스포크 냉장고/오브제 냉장고/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식기세척기/쌀냉장고/빌트인 정수기/와인셀러/의류관리기 등)은 추가선택품목(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 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추가선택품목 포함), 주방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 욕실가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후면, 천장, 측면, 바닥면은 최종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공간은 세탁기 및 건조기 사양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함 수 있으므로 개별 불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이 소유하신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기타 소형가전 등 가전사양 및 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각종홍보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각종홍보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씽크대상판(추가선택품목 포함) 및 욕실선반, 손빨래하부장(추가선택품목)), 엔지니어드스톤류(현관디딤판, 화장대(추가선택품목) 상판)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수량 및 소비전력이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의 깊이와 크기는 본 공사시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 등기구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다용도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각종 패널류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팬트리,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 도장으로 마감되는 부위의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며(일부 미설치 부위 제외),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욕실, 현관(현관 팬트리), 실외기실,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은 줄눈색상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타입 단위세대내 거실 디자인월 및 복도패널 마감부위의 경우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 붙박이장(추가선택품목 포함)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주택전시관 및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ㆍ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주택전시관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재(몰딩 포함)의 재질, 규격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벽 락패널 줄눈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2(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제조사,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분할,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다용도실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 건조기 설치사례로 시공 미포함 항목이며, 가스식 건조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창호 유리는 주택전시관용임)
- ·주방가구 상판의 인조대리석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외부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전시관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 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외부창호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가동시 인접한 실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사용상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디테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이 실외기실에 에어컨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구가 함께 설치 됩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짝수층과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제조사, 규격 및 사양(색상 포함), 위치, 열림(개폐)뱡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장비는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본 공사시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본 공사시 실외기실 바닥 및 천장 높이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설치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내 세탁수전,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 천장에 설비배관 및 렌지후드용 팬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설치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점검구의 크기 및 위치, 마감자재 사양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 도어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어 개폐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현관팬트리에는 결로 방지용 코일이 설치(수납공간 제외)되며, 내부 물품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시 실외기실에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내 입상배관 및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에어컨 실외기실내 환기장비, 환기조절기, 조명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와 사양은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모든 도어(침실, 욕실)의 하드웨어(경첩, 손잡이, 스토퍼 등)는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끼임 방 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창호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 설치개소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전시품목POP가 부착된 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으며 수납공간 사용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자동식 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현관 부위에 설치된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거실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세대내에 설치된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제공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환기디퓨져, 조명기구, 콘센트, 배수구, 위생기구, 수전, 악세사리류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식탁등은 설치되며, 고객이 입주 후 추가적인 주방 식탁등 팬던트(조명) 설치시 사용가능한 예비 스위치만 제공되며, 별도의 팬던트(조명)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 침실1만 기본으로 냉매배관이 제공되며, 침실2,3(해당타입 알파공간 포함)에 일반형 에어컨을 설치시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슬리브, 냉매배관, 드레인관, 실외기 위치 선정)은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 ·모든 세대는 실외기실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급수급탕분배기, 온수분배기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벽부형 조명기구, 환기제어기, 환기장비의 설치위치는 하향식 피난구 열림(개폐) 방향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 소유하고 있는 대용량 가전기기 사용시 세대 전기 용량 및 차단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전기관련 공사를 해야 합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시 제공되는 확장 기본형 지급품목은 평면의 형태 및 설치공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계약전 주택전시관에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9A/B, 119C/D 타입은 해당세대 전면에 오픈 발코니가 설치됩니다. 119A 및 119C 타입은 거실 전면에 119B 및 119D 타입은 침실2 전면에 설치되며, 해당타입 동 층별로 교차되어 오픈 발코니가 설치됩니다. 오픈 발코니 설치에 따른 차이점은 다음과 같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타입별 오픈 발코니가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핸들에는 발코니 출입 및 갇힘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택전시관 119C타입 거실창호에 설치된 창호 핸들은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픈 발코니가 설치되는 외부창호 옆 벽면에는 오픈 발코니 등기구용 스위치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오픈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는 119A. 119C타입의 침실2 전면, 119B. 119D타입의 거실 전면에는 투시형 금속난간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 119C타입 오픈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난간대는 본 공사시 유리, 프레임 형태, 분할,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픈 발코니 바닥은 타일로 마감됩니다. 본 공사시 바닥타일은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배시공으로 인해 주택전시관과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픈 발코니에 설치된 등기구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119C타입 오픈 발코니에 설치된 우수입상관의 재질, 규격, 고정방법, 위치 등이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119C타입 오픈 발코니 주변으로 보이는 아파트 외벽의 줄눈형태 및 도장색상은 본 공사시 해당세대 동배치 및 층수에 따라 변경되며,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19A,B 119C,D 타입 세대 오픈 발코니에 우수용 입상배관이 노출되어 시공 될 예정이며, 겨울철 사용 시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9A,B타입, 119A,B타입, 119C,D타입 알파공간은 출입문이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됩니다. 알파공간 슬라이딩 도어(유리포함)는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어 특성상 벽체와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는 결로 방지용 코일이 설치될 예정(99A, 119A,B타입 제외)이며, 내부 물품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욕실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온도조절기 설치 없이 거실 또는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욕실 난방 제외 구간 : 욕조 하부, 샤워실)
- ㆍ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정수기 및 음식물 처리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다용도실(또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본 시공 시 설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발코니 배수 입상관이 시야확보 및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세대별 입상관 위치도 상이 합니다.
- •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방식이 상이하게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용 배기팬은 다용도실에 설치 되며, 후드 가동 시 실내 음압이 형성될 수 있으니 창문을 열고 사용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5. 지하 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 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방지 안전시설로 이동형 차수판이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6m 이상(공동주택 하부 통과부위 제외),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 이상(택배차량 통행을 위한 유효높이 2.7m), 주차면은 2.1m 이상입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지붕 구조물에 의해서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구획은 7101동 지하2층 주동 출입(#2 출입구) 주변에 10대(장애인주차 1대포함)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규제봉 설치 및 색채구분을 통하여 공동주택 주차장과 구분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차량은 주출입구(서측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임으로 근생주차차량의 진출입을 막거나, 이용을 할수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구 및 경사로 시종점 인근에는 차량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차를 할수 없는 공간이 설치됩니다.
- 7102동, 7103동, 7107동, 7108동 지하2층에는 통학차량 탑승을 위한 대기공간이 각1개소씩 설치되며, 향후 철거 및 차량을 주차 할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에는 과속방지턱이 16개소 설치되며, 일부구간에는 보행을 위한 보행동선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빗물저류조, 열교환기실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기둥위치 포함),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용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홈 등은 주거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상가외부 가로수로 인한 조망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락카 및 샤워,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에듀센터, 웰니스센터 등)은 내부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기타시설은 인테리어 미적용)와 디자인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주민운동시설 제외)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의 부대복리시설 상부에 위치한 7107동, 7108동의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대지 단차에 따라 데크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은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외부에서 직접 출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외부 이동시 일기(비와 눈 또는 기온 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는 계단 및 램프,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휀스, 각종게시판, 맘스스테이션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가 및 단지 내 지상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a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시 단지 주변의 도로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레벨 변경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에 따른 심의를 득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충전기 12개소, 완속충전기 62개소(과금형콘센트 51개소 포함)가 설치되며, 수량 및 설치장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시스템은 세대수의 약 15%가 지하주차장 내 동당 2개소씩 총 17개소가 설치됩니다.(냉동, 냉장함 제외)
- •지하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전기, 통신용 배관 및 트레이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지하주차장 내 공용공간을 공유하여 설치 됩니다.

- •무인택배 시스템은 관리사무소 내부서버로 운영됩니다. 향후 원격관리 시스템(관제센타 통화, 문자발송, 카드결제 등)으로 운영할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서비스 비용 및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 소방서 협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용 소화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2층의 일부구간(7110동 후면 주차15면)은 지상의 비상차로 진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에 따라 차로높이는 2.3M이고 택배차량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2층의 일부구간(7101동과7102동 사이, 7102동과7103동 사이)은 옥외계단 및 옥외스탠드의 설치에 따라 주차장 상부슬라브가 경사지게 설치되며, 차량 주차 및 보행이동시 불편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 주차면 은2.1M이상 높이로 계획되어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 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ㆍ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	건축 소방 정보통신		전기	비고
회사명	주식회사 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한국코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포브텍	주식회사 동우이앤씨	
감리금액	3,242,655,900	623,761,900	192,500,000	465,000,000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1조 제3항,「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이하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택지비 가산!	비계	157,826,137,253		건축비 :	가산비 계	247,982,745,079
	법정 택지 (	이자	10,457,247,098		법정초과복리	의시설 건축비	2,387,268,403
		취득세	5,055,248,499			홈네트워크	8,766,097,380
	취득세	11 71 11	3,033,210,133		인텔리전트	초고속통신특등급	1,921,986,600
		교육세	505,524,849		설비 공사비	에어컨냉매배관	2,186,016,660
		재산세	530,801,084			기계환기설비	4,167,076,590
				건축비	공동주틱	<sup>낶성능등</sup> 급	5,236,761,721
택지비	재산세	교육세	106,160,209		에너지절약형	3,220,538,283	
가산항목		재산세도시지역분	371,560,761	가산항목	지하주차장 층	981,733,582	
	등기수수료	보수료 인지세	21,060,313 345,940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28,980,960
	말뚝박기 공		1,957,247,006			외관특화공사비	3,031,007,850
					사업승인조건		
	암석지반 공	사미	4,383,374,951			법정초과 조경시설 설치비	1,412,029,873
	흙막이 및 차수박	벽 공사비	7,000,978,550				
	지역난방부	1,055,375,497		분양보증수수료		863,675,605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아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CH:	항목		세분류	금액	대	항목		세분류	금액	대	항목		세분류	금액		
			택지공급가격	126,381,212,496				철근콘크리트공사	59,180,573,000				오배수설비공사	664,000,000		
			기간이자	10,457,247,098				용접공사	-				위생기구공사	1,901,872,000		
택.	지비	[8]	필요적 경비	6,590,701,655				조적공사	1,875,116,000				난방설비공사	2,976,166,000		
			그 밖의 비용	14,396,857,951				미장공사	4,429,907,000			기계 설비	가스설비공사	684,790,000		
			토공사	4,080,352,000				단열공사	864,421,000			2비	자동제어설비공사	188,316,000		
			흙막이공사	-			방수·방습공사	2,034,561,000				특수설비공사	3,259,942,000			
			비탈면보호공사	-	건 국				목공사	4,013,295,000		공		공조설비공사	420,090,000	
			옹벽공사	662,634,000				가구공사	6,660,420,000	건		그밖의	전기설비공사	12,010,234,000		
	건 공 토 축 사 료		석축공사	-				금속공사	2,969,345,000	축			정보통신공사	3,147,510,000		
7.1			우·오수공사	397,580,000	HI	비비	L-7	지붕 및 홈통공사	211,180,000	- H		공종	소방설비공사	5,301,069,000		
건 축		공동구공사	-	-1			창호공사	5,384,923,000	٦			승강기공사	1,882,938,000			
비	비	복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유리공사	2,553,281,000			그밖의	일반관리비	14,974,770,000		
					도로포장공사	608,865,000				타일공사	2,145,978,000			공사비	이윤	6,551,462,000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93,527,000				돌공사	1,699,251,000				서게내	2.474.074.050		
			정화조시설공사	-				도장공사	1,168,637,000		7	······················	설계비	2,474,974,058		
			조경공사	3,578,221,000				도배공사	988,191,000				감리비	4,523,917,800		

		부대시설공사	1,855,374,000			수장공사	2,274,460,000		일반분양 시설경비	8,021,288,731
		75-111711				주방용구공사	5,678,928,000		분담금 및 부담금	4,751,037,000
		<del>공통</del> 가설공사	3,519,370,727							4,731,037,000
	74	가시설물공사	239,166,000			잡공사	5,913,892,000		보상비	-
	신 축	지정 및 기초공사	4,061,053,000		기계	급수설비공사	1,051,424,657		기타사업비성경비	8,499,843,599
	<u> </u>		1,001,000,000			751411711		그 밖의	의 비용	34,502,409,228
		철골공사	-		설비	급탕설비공사	1,051,425,000	합	계	405,808,000,000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84,065,600,000	01282024-101-0002000

-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 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 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 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사업 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 위탁사 겸 시공사(디엘건설 주식회사 외5개사) 또는 시행 수탁자[우리자산신탁(주)]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날짜를 지정·통보할 예정이며, 사전방문일자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6년 07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이며,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만 적용됨, 단, 기 납부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 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입주시 시행 및 시공사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동절기 입주시 세대물청소등의 사유로 통수 및 동파방지 사전난방이 진행되어 가스사용량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분양세대 중 입주기한내 입주세대는 입주개시당일이전까지, 입주지정기한내 입주하지 못한 세대는 입주지 정일 당일까지 사전난방 관리가 진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동파방지 사전난방관리 및 가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 키불출 세대는 키불출일 당일을 입주일로 간주하여 난방관리를 종료하고, 이후 발생하는 가스비용 및 관리는 키불출세대 부담으로 함.)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부대복리시설 :

- 관리사무소, 용역원휴게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어린이 및 유아놀이터, 키즈카페, 에듀센터, 웰니스센터, 그린카페, 모빌리티 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락커룸 및 샤워실, 스크린골프, 실내골프연습장, GX룸
- 헬스가든 1개소, 어린이놀이터 3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조경시설

####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행수탁자		분양대행사					
상 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디엘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	경우종합건설 주식회사	풍창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담개발	주식회사 트리플아이앤디	주식회사 마켓리더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10111-0163115	110111-0144347	120111-0220442	110111-0265565	134111-0408026	110111-5865849	110111-3164459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595번길 9, 702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 12(부평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5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타워동20층2005,2006호

#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분양물건은 「신탁법」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겸 시공사 디엘건설㈜, ㈜한양, 경우종합건설(주), 풍창건설(주), ㈜도담개발, ㈜트리플아이앤디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등 간에 체결한 관리 형토지신탁 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본 조의 특약사항은 분양계약의 다른 일반조항 및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보다 우선하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디엘건설㈜외 5개사 가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디엘건설㈜외 5개사이고,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하고 신탁재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위탁자 디엘건설㈜외 5개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2.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우리자산신탁㈜' 명의로 개설된 분양대금 수납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3.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디엘건설㈜외 5개사 및 수탁자 우리자산신탁㈜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미·오시공 포함)은 위탁 자 겸 시공사인 디엘건설㈜외 5개사가 부담합니다.
- 4. 수분양자는 대상 부동산이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은 위탁자 디엘건설㈜외 5개사와 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에 따라 우리자산신탁㈜가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급계약 대상재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우리자산신탁㈜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 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디엘건설㈜외 5개사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 5.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설계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 사업비, 제1순위 우선수익자 지급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6.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디엘건설㈜외 5개사가 부담합니다.
- 7. 우리자산신탁㈜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8.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우리자산신탁㈜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디엘건설㈜외 5개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 9. "병" 또는 매수인(분양계약자)은 해지 또는 전매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10.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우리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빌딩 13층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34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국공유지 제외)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시 개별등기

#### ■ 분양관련 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분양 안내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2

■ 사 업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9BL(마전동 산126-2 일원)

■ 홈페이지: https://www.dlcon-apt.co.kr/

■ 분양문의: 032-568-1999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또한,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모집공고상 기재사항의 오류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를 우선 적용함.